

TURKEY 
터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3







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점차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프랑스에 대한 세무안내책자를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발간된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뉴질랜드에 대한 세무안내 책자에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증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기보연근

터키 국기와 그 의미



- 터키 국기는 빨간 바탕에 흰 초승달과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교의 상징임. 터키 국민은 자국 국기를 ‘달과 별’이라는 뜻의 ‘아이 일디즈 (ay yıldız)’라고 부름.
- BC 4세기 마케도니아의 군세(軍勢)가 비잔티움(이stanbul)의 성벽 밑을 뚫고 침입하려 했을 때 초승달 빛으로 이를 발견하여 나라를 구하였다는 전설을 그리고 있다.
- 그밖에 1398년의 코소보전투가 끝난 후 피바다 속에 나타난 신비로운 달과 별을 가리킨다는 등 여러 설이 있다.
- 기의 기본 형태는 술탄인 셀림 3세가 지배하던 1793년경에 나타났고, 1844년 별이 추가된 이래 국기로 사용하여 왔으며 1936년 6월 5일 추인(追認)하였다.
- 가로세로 비율은 3:2이다. 튀니지의 국기와 비슷하다.
- 1844년 제정 1936년 정식국기로 공인.

터키 지도



국가 개요

1.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7천 5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유럽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국임
2. 국민의 약 90%를 차지하는 터키족 외에 천만명 내외로 추정되는 쿠르드족 및 아랍인(35만~40만), 아르메니아인(5만) 등의 민족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도임
3. 1980년대 이후 터키 경제는 인구, 지리적인 이점, 자원보유 등 성장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와 경기침체를 겪으며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음. 또한 극심한 소득분배의 불균형, 지역별 부의 편중 등도 터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
4. 터키는 2005년 10월 EU 가입협상을 시작한 후 소수민족 인권상황 개선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터키의 사이프러스 발선박 및 항공기 입항금지를 주된 이유로 2006년 12월 EU 가입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음. 2012년 EU 가입추진이 정치·경제적 주된 관심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음.
5. 최근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시장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이고 우리나라가 블루오션의 신시장 개척을 위하여 터키 등의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진출 및 경제협력 증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
6. 2013.5.1. 한·터키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Contents

제1장 국가 개황	1
1. 일반 사항	3
2. 정치 개황	4
3. 경제지표	4
4. 한-터키 관계	6
제2장 정치 사회 동향	7
1. 터키 행정부	9
2. 세속주의 원칙 지향	10
3. 親서방, 親아랍의 균형외교 지향	10
4. EU 가입문제	12
5. 이스탄불 공원 재개발 반대 반정부 시위	13
6. 한국과의 주요 이슈	13
제3장 경제동향	15
1. 최신 경제지표	17
2. 최신 경제동향	18
3. 경제전망	20
4. 주요 경제정책	22
5.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및 변경사항	26
6. 무역보완협정 체결현황	28

제4장	주요산업 동향	31
	1. 개요	33
	2. 산업별 현황	33
제5장	한·터키 FTA	39
	1. FTA 일반	41
	2. FTA 추진경과	41
	3. FTA 협정문 구조	42
	4. FTA 주요내용	43
	5. FTA 기대효과	44
제6장	외국인 투자환경 및 동향	47
	1. 투자환경	49
	2. 외국기업 투자동향	51
	3. 한국기업 투자진출 동향	55
	4. 특별투자지역	56
제7장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61
	1. 주요 투자법 내용	63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66
제8장	투자 진출 형태별 절차	75
	1. 투자방식	77
	2. 투자 진출 형태별 절차	78
제9장	조세제도	81
	1. 소득세(income taxes)	83
	2. 법인세(CORPORATE TAX)	92

3.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es)	96
4.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101
5. 금융 및 보험 거래세(banking and insurance transaction tax)	101
6. 인지세(stamp duty)	102
7. 통신세(communication tax)	103
8. 상속세(inheritance)와 증여세(gift tax)	104
9. 부동산세(property tax)	104
10.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	105
제10장 터키진출기업 현황 및 투자 진출방안	107
1. 우리기업의 對 터키 투자현황	109
2. 한·터키 FTA 발효와 경제교류 증진	111
3. 對 터키 진출의 장애요인	112
4. 對 터키 투자진출 필요성(중요성)	113
5. 성공적인 투지진출 기본 방향	116
6. 터키 중기 경제프로그램	117
제11장 한-터 조세조약	121



제 1 장 국가 개황

1. 일반 사항
2. 정치 개황
3. 경제지표
4. 한-터키 관계

1 | 일반 사항

국명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Türkiye Cumhuriyeti)
위치	유럽, 아시아, 중동 - 접경국 : 시리아, 이란, 이라크, 불가리아, 그리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국경선 : 2,875km) - 해안선 :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 지중해, 2개해협(8,333km)
면적	측량기준 : 783,562km ² (남한의 약 8배) 지표기준 : 아시아(755,688km ² , 96.4%), 유럽(24,378km ² , 3.6%)
기후	지중해성기후(해안), 내륙성기후(내륙)로 전반적으로 온화, 4계절이 뚜렷하며, 여름이 건기, 겨울이 우기
주요도시	이스탄불(1,385만명), 앙카라(497만명, 수도), 이즈미르(400만명), 콘야(245만명), 부르사(269만명), 아다나(213만명)
인구	75,627천명(2012)
언어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종족	터키계(87%), 쿠르드계(8%), Circassian(2.1%), 아랍인(1.6%), 아르메니아인(5만명), 소수 유태인 등
종교	이슬람교(99%, 다수가 수니파), 기타(헌법상 정교분리)
건국일	1923.10.29
정부형태	대통령제를 가미한 총리 중심의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대통령(Abdullah Gül, '07.8.28 선출, 임기 7년)
정부수반	총리(Recep Tayyip Erdoğan, '02.11, '07.7, '11.6 3선)
입법부	단원제(National Assembly), 총 의석수 550석
정당	정의 발전당(AKP, 여당, 325석), 공화인민당(CHP, 야당, 136석), 민족행동당(MHP, 54석), 무소속(35석)

2

정치 개황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실권자)	국가원수 : Abdullah Gul 취임일 : 2007. 8월(7년 임기) - 의회에서 과반수 다수결로 선출되며, 임기 7년의 단임제
주요내각	수 상 : Recep Tayyip Erdogan(실권자) 취임일 : 2007. 8월
의 회	단원제(550석, 임기 5년의 직선제)
주요정당	정의개발당(AKP), 공화인민당(CHP), 모국당(ANAP)

자료 : 터키통계청, TAIK(Turkish-U.S. Business Council)

3

경제지표

○ 교역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출	3,773 (▼7.7)	2,661 (▼29.5)	3,753 (△41.1)	5,071 (△35.1)	4,552 (▼10.2)
수 입	362 (△28.5)	434 (△20.0)	516 (△18.8)	805 (△55.9)	672 (▼16.4)
무역수지	3,411	2,227	3,237	4,226	3,879
총교역액	4,135	3,095	4,269	5,876	5,224

※ 2012년 기준 터키는 우리의 수출대상국 25위, 수입대상국 54위

○ 투자

(단위 : 천불)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누 계
터 키 의 對 한 국 투 자	1,308 (7)	205 (4)	1,977 (10)	916 (7)	2,131 (9)	<96~12> 12,594 (74)
한 국 의 對 터 키 투 자	89,797 (30)	247,086 (45)	66,636 (30)	135,842 (39)	291,995 (43)	<87~12> 1,209,167 (297)

자료 : 지식경제부 · 한국수출입은행(신고기준)

○ 한국의 對터키 10대 교역품목 현황(2012년)

- 수출품

순위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1	합성수지	395	8.7
2	승용차	365	8.0
3	자동차부품	311	6.8
4	선박	295	6.5
5	건설중장비	256	5.6
6	평판디스플레이	167	3.7
7	기타플라스틱제품	140	3.1
8	합성섬유	103	2.3
9	아연도강판	98	2.2
10	냉연강판	92	2.0
	소 계	2,222	48.8
	전 체	4,552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입품

순위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1	기타석유제품	293	43.6
2	자동차부품	65	9.7
3	직물제의류	28	4.2
4	편직제의류	19	2.8
5	기타정밀화학제품	16	2.4
6	기타비금속광물	13	1.9
7	가죽제가방	13	1.9
8	나프타	11	1.6
9	철강및비합금강형강	8	1.2
10	기타정밀화학제품	8	1.2
소 계		475	70.5
전 체		672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 한-터키 관계

체결현황	사증면제협정(1972), 문화협정(1974), 경제기술협력협정(1977), 항공협정(1979) 이중과세방지협정 (1986), (1994) 투자보장협정, 섬유협정(1997), 원자력협력협정 (1999), EDCF 기본협정(미발효) (2003), 관광협력협정(미발효) (2006), 자유무역 협정(가서명, 미발효) (2012), 자유무역협정 5월 1일 발효(2013)
교역규모 (한국기준)	○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50억 7,000만 달러 수입 : 8억 400만 달러 무역수지 : + 42억 6,600만 달러 ○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45억 5,200만 달러 수입 : 6억 720만 달러 무역수지 : + 38억 8,000만 달러
교역품	○ 수출품 :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선박 등 ○ 수입품 : 의류,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등
교민	총 교민 수 약 1,550명(일시 체류자 포함, 2012년 추정)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제 2 장 정치 사회 동향

1. 터키 행정부
2. 세속주의 원칙 지향
3. 親서방, 親아랍의 균형외교 지향
4. EU 가입문제
5. 이스탄불 공원 재개발 반대 반정부 시위
6. 한국과의 주요 이슈


1 터키 행정부

- 터키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이다.
- 현재 대통령은 2007년에 선출된 **Abdulah Gul** 대통령이며, 당선 당시 임기는 5년이었으나,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늘리는 것이 확정된 바, 현재 Gul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터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기는 하나 행정부에 대한 권력에는 제한이 있다.
- 실제 행정부의 수장은 총리로 2011년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한 **Recep Tayyip Erdogan**이다. 터키의 총리는 실제 행정부 및 복수정당제의 수장으로써 활동하게 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권자로서 국가원수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 특히, 그는 2014년에 첫 직선 대통령이 유력하며 사실상의 정치, 경제, 외교분야의 현 터키의 정책은 총리의 의중이 대부분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세속주의(Secular)를 표방한데 비해 이슬람 원리주의를 주장하는 권력자로서 향후 터키의 향방은 에르도안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 대통령 : **Abdulah Gul(압둘라 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 1950년 10월 29일, 카이세리 ○ 최종학력 : Istanbul대학 경제학 박사(1983년) ○ 주요이력 : 터키 총리 역임(2002년) ○ 재임기간 : 2007년 ~ 현재
---	--

□ 총리 : Recep Tayyip Erdogan(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실질적인 권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 1954년 2월 26일, 이스탄불○ 최종학력 : Marmara대학 경제학과 졸업(1981년)○ 주요이력 : 이스탄불 주지사 역임(1994~1997)○ 재임기간 : 2002년 ~ 현재
---	---

2 | 세속주의 원칙 지향

- 터키는 전체 국민의 99%가 이슬람 교도인 이슬람 국가이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주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음. 이 원칙은 1923년 터키 공화국 출범 당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1996년 집권에 성공한 이슬람계의 복지당(RP)은 이러한 세속주의를 일탈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체되었다.
- 그후 복지당(RP)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미덕당(FP)도 반세속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01년 6월 해체되었다.

3 | 親서방, 親아랍의 균형외교 지향

-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서방 및 중동 국가들과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며 親서방, 親아랍 균형외교를 지향한다.
-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1980년 미국과 국방경제협력협정(DECA)을 체결한 이후

1991년 진보된 협력관계를 거쳐 1999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함. 그러나 2007년 10월, 미하원 외교위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1915-17년)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¹⁾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대미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 중동(이란, 시리아) 및 러시아와 구소연방 국가와도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와는 최근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²⁾는 아직도 그리스와의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로 남아 있다.

1) 아르메니아 학살사건 아르메니아 학살사건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군대에 의해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된 사건으로, 2006년 10월 프랑스 하원은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이 문제로 인하여 현재 터키와 프랑스는 정치적인 갈등관계에 있으며 프랑스제품 불매운동 등 프랑스에 저항하는 운동이 터키 전역에서 발생한 바도 있다.

프랑스 외에도 터키와 오랜 우호관계를 맺어온 미국의 상하원에서도 동 사건을 대학살로 인정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등 동 사건은 유럽 지역을 벗어난 국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1월 이스탄불에서 아르메니아계 유명 터키언론인이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동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터키 정부는 당시 아르메니아인들 뿐 아니라 수많은 터키인들도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에 의해 아르메니아 사건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뒷받침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1974년 7월 사이프러스에 터키계와 그리스계간 유혈충돌 사태가 발생하자, 터키 정부는 사이프러스에 대한 군사개입을 단행하였음. 터키는 사이프러스 북부지역을 점령하여 그리스계인을 퇴거시키고 터키계를 이주, 정착 시키면서 1975년 2월에 터키계의 별도 정부(Turkish Federated State of Cyprus) 수립을 선포하고 1983년 11월에는 북부사이프러스 터키공화국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함.

이후 사이프러스 문제해결을 위한 터키계 및 그리스계 주민간 협상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통합에 관한 양측의 합의도출에는 실패함. 2004년 5월에는 남부사이프러스가 단독으로 EU에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는 남부사이프러스를 정식 국가로 승인함.

- 터키의 EU가입은 2005년 10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목전에 둔 것처럼 보였으나, EU 집행위는 2006년 11월 발표된 EU 연차 보고서에서 EU가입을 위한 터키 정부의 개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현재 터키에 대한 35개 협상항목 중 무역, 금융 등 8개 항목에 대한 협상을 전면 보류하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 공식적인 이유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여성인권 개선, 소수민족 및 노동조합 권익 보호 등이나, 실제로는 남사이프러스 영공 및 영해개방, 아르메니아 학살 문제 등과 관련하여 기존 EU가입국들과의 마찰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EU에서는 터키의 EU 가입조건 중 하나로 남사이프러스에 영공 및 영해를 개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터키정부는 그 동안 이를 거부하여 왔다.
- 2006년 12월, 터키 정부는 남사이프러스에 대해 항구 및 공항을 각각 1곳씩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EU 측에서는 전면 개방을 요구하면서 결국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태로 남아 있다.
- 이후 터키 정부는 2007년 4월, 2013년 EU가입을 목표로 각 분야의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 7개년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EU 가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그러나, 2007년 5월 Nicolas Sarkozy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터키의 EU가입은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Sarkozy 대통령은 터키측에 EU가입의 대안으로 이스라엘, 모로코 등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터키 주변국 위주의 Mediterranean Union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2007년 실시된 대선 및 총선에서 기존 정부가 집권 연장에 성공하면서 터키 정부측의 EU 가입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스탄불 공원 재개발 반대 반정부 시위

- 터키 이스탄불 도심 탁심광장 소재 계지공원 재개발 반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으로 촉발된 시위대와 진압 경찰간의 충돌이 반정부 시위로 변모되어 터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동 시위는 2013. 6. 2. 이스탄불을 포함 앙카라, 이즈미르, 안탈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스탄불 시위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여, 시위대와 진압 경찰간 무력 충돌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 터키 Muammer Guler 내무장관은 2013. 6. 2. 현재 전국 67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115명의 경찰과 58명의 시민이 부상하였고, 사망자는 없다고 발표 하였다.

6 한국과의 주요 이슈

- 터키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 나라를 혈맹 우방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후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다.
- 특히 82년 Evren 대통령의 공식 방한 이후 양국 주요 인사들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었으며, 2004년 Erdogan 총리의 방한에 이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터키 방문으로 양국간 우호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압둘라 굴(Abdullah Gül)」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G20 등 주요 국제문제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터키는 UN, IAEA 등 국제무대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부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 또한, 최근 터키정부는 차세대전차 및 훈련기 도입에 있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는 등 국방조달분야에서도 새롭게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양국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없으나 한국의 對 터키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터키정부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무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문제점은 한국인 터키 관광객 증가 및 한국기업들의 對터키 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 3 장 경제동향

1. 최신 경제지표
2. 최신 경제동향
3. 경제전망
4. 주요 경제정책
5.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및 변경사항
6. 무역보완협정 체결현황

1 최신 경제지표

지표	2009	2010	2011	2012
GDP(십억달러)	616.7	731.6	774.1	773.1
경제성장률(%)	△4.7	8.9	8.5	2.6
1인당 GDP(달러)	8,559	10,022	10,469	10,673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6.53	6.40	10.45	6.16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1.23	8.87	13.33	2.45
실업률(%)	13.5	11	9.8	9.1
수출(백만 달러)	102,139	113,930	134,954	152,560
수입(백만 달러)	140,869	185,493	240,833	236,536
무역수지(백만 달러)	△38,730	△71,563	△105,879	△83,976
외채(백만 달러)	268,194	287,326	306,551	326,251
외환보유고	112,231	110,047	110,573	133,942
이자율(%)	15.67	13.0	15.9	16.05

자료 : 터키 중앙은행, 대외무역청, 통계청, EIU

- 터키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9년 -4.8%를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최근 2년간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인 연 8%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다.
- 그러나,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편, 최근의 터키 경제성장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EU, 미국 등 주요국이 -0.4%,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 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 들이 1.5%, 3.4% 등으로 주요 신흥국들 보다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인당 GDP는 2010년 1만달러를 돌파한 이래 2011년 10,469달러, 2012년 10,673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견지해 오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건실한 무역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다만, 물가상승률은 2008년 이후 6~10%를 등락하다가 2012년에는 다시 한자리 수인 6%대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2013년 1월,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1.5%에 육박하면서 물가상승률의 추이에 따라 터키의 경제지표가 좌우될 전망이다.

2 | 최신 경제동향

1. 인플레이션

○ 물가상승률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도 별 동요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던 터키의 물가상승률도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에는 큰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 터키의 물가상승률(PPI 기준)은 매년 10%를 오르내리는 수준일 만큼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8~11%를 오르내리던 물가가 하반기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10월에는 최저치인 2.6%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크게 감소하여 2012년 전체 물가상승률은 2011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6.2%를 기록하였다.
-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그 동안 터키 경제에 있어,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 만큼,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플레이션 정책

- 터키 중앙은행은 늘 경제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을 펼치고 있다.

- 터키정부는 매년 한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터키 경제는 2004년~2007년 간 한자리수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 그러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말미암아 다시 10%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연 평균 6%대의 물가상승률로 물가 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듯 보였으나, 2013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7%에 달하면서 2013년 한자리 수 물가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2. 이자율

- 터키 중앙은행에 보고된 2013년 1월 터키의 기준금리는 5.5퍼센트이며, 1990년부터 2013년동안의 터키의 평균 이자율은 6.79퍼센트이다. 터키에서는 이자율은 터키의 통화 정책위원회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한다.

3. 환율

○ 환율정책

- 터키 중앙은행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터키는 터키 리라(TL)라는 자체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 1 터키 리라는 2013년 2월 현재, 약 1.75달러에 형성되고 있으며 터키는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는 주로 달러화를 사용하며, 수출대금을 받을 때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 이는 주로 수입의 많은 부분이 중동과 아시아에서 거래되며 수입은 대체로 EU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 1인당 GDP

- 1인당 GDP는 2010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2012년 연말에는 11,000 달러에 가까운 10,973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전망 대비 약300달러가 줄어든 10,673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출입

- 2012년도의 수출입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한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도 터키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1,525억 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수입은 1.8% 감소한 2,3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이는 터키 정부의 수출 다각화 정책으로 인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터키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터키의 경제부 장관은 대 EU 수출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다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경제전망

- 터키의 최근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주변국들의 경제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력 수출시장인 유럽지역은 재정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국가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최근 민주화 열풍 및 시리아 소요사태, 이란의 핵개발 파문 등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주변국들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터키 실물경제는 꾸준한 성장세

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2년 경제성장률은 3% 내외로 전망된 수치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된 바, 지난 2년간의 8% 대 고성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유럽지역의 마이너스 또는 0% 대의 성장률, 미국의 저성장 기조에 비해서는 높은 성장률 전망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수출시장 다각화 및 꾸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터키 정부에서도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터키 정부의 경제전망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성장률 (%)	4.1	5.1	-
GDP(십억달러, Current Price)	858	919	998
1인당 GDP	11,318	11,982	12,859
실질 GDP 성장률	4.0	5.0	5.0
실업률	8.9	8.8	8.7
수출 (십억달러)	158	172.3	187.1
수입 (십억달러)	253	272.2	291.2

자료 : 터키 경제부, 통계청, OECD

- 아울러,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추이 또한 경제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그 동안 터키 경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여전히 무역적자 폭이 크다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에너지 및 광물연료의 수입이 이러한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바, 터키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무역수지적자를 줄여나가고자 하고 있다.

1. 기본원칙 및 평가

- 터키는 서구국가와 같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구하고 동시에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실물 경제안정의 측면에서는 물가상승률 억제 정책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그러나 물가는 연 10%를 상회할 정도로 물가 억제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터키 중장기 경제개발계획(~'20년)

- 터키는 2007년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중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중점 추진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1년 경제위기 이후, IMF로부터 금융구제를 받은 경험이 있어 거시경제지표 안정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 터키는 이러한 경제개발계획 내에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중점추진과제에는 건설(인프라), IT(자동화 및 전자정부)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에너지·교통 인프라 개선의 경우, 발전소, 송유관 건설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확산 및 자동화 도입 등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프로젝트, e-Learning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다.

터키 경제개발계획 중점추진과제(요약)

- 에너지·교통 인프라개선
- 정보통신기술 확산 및 자동화 도입
- 노동시장·교육시스템 개선 및 노동시장과 교육시스템간의 연계성 제고
- 낙후지역 개발 및 공공투자 개선
- 전자정부 효율성 및 서비스 확대

자료 : 터키 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07)

3. 터키 수출확대 정책(~'23년)

- 수출확대 및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2009년부터 터키 재무성과 수출 입협회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수출확대 정책의 주요목표는 2023년까지 연간 수출 5조원을 달성(매년 12%의 수출증대)및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내 진입(전 세계경제의 1.5%)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을 위해 현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형시키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터키 수출확대전략 중점추진사항(요약)

- R&D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경쟁력 확보
- 운송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 허브로의 도약
- 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투자확대를 통한 자국 브랜드의 세계화

자료 : 터키 경제부

4. IMF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상환

- 터키는 2001년 경제 위기 이후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던 관계로 IMF 구제금융 상환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2011년 말에 IMF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사실상 구제 금융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 한편, 구제 금융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는 IMF가 제시한 지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IMF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공공부문 인력 감축, 세제 개혁, 은행 감독기구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터키 정부는 이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

5. 서비스업 및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터키 정부는 수입대체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당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대외 개방형 수출드라이브 산업정책을 지향하였다.
- 터키 경제는 2006년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이 GDP의 9.3%, 섬유, 주요 다국적 자동차 생산기업의 유럽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조립 생산, 철강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31.9%, 관광산업 중심의 서비스업이 58.8%를 차지하는 구조이다.
- 제조업 분야는 EU 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주요 공기업의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 자동차 및 섬유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 설비 투자가 요구됨. 유서 깊은 유적과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관광 산업은 전통적으로 유망한 분야이다.

6.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이 경제개혁의 관건

- 재정체계 강화, 조세징수제도 개선, 금융부문 안정성 제고, 부패 축소, 민영화 지속추진이 터키 정부의 당면과제이며,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 인플레이션 억

제, 세원 투명화 등이 또한 터키 정부의 극복과제로 대두됨. IMF는 2005년 5월 부터 3년간 대기성차관 지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경제 개혁 추진을 터키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터키 정부는 경제안정화, 대외경쟁력 제고, 외국인투자 유치 및 대 EU 관계호전을 위해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분간 경제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인플레이션 억제 및 대외거래 포지션의 불균형 완화에 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7. 2005년 이후 민영화 단계적 추진

- IMF는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민영화를 터키 정부에 강력 권고하였으나 터키 정부는 민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영화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나, 2005년 이후 터키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 * 주요 민영화 기업으로는 프랑스 Alcatel에 지분 40%를 매각한 Teletas(전력업체), 이탈리아 Fiat에 지분 17%를 매각한 Tofas(자동차업체), 러시아 Tatneft 자회사인 Efremov Kautschuk에 지분 66%를 매각한 Tupras(정유업체), 네덜란드 ING Bank에 매각('07.12)된 Oyak Bank 등임.
 - * Turk Telekom의 민영화(Saudi Oger 인수) 추진으로 2007년 2월, 43억 달러의 지분(55%) 매각 이후, 추가 지분(45%) 매각이 추진 중임.

8. 대외경제정책

- 1980년대 수출지향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무역자유화와 수출 촉진정책을 채택하고, 법인세 감면, 세금 환급, 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조치를 취하였다.
- 1990년대 들어서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WTO 및 여타 국제규율에 상응하도록 수출입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하였음. 2003년에도 수입제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 규정과 합치되는 수입제도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 특히, EU 가입을 위해 1996년 1월에 EU와 관세동맹을 맺게 됨에 따라 수출입 제도를 전반적으로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터키가 중동부 유럽국가 및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EU의 공동무역정책과 같은 기초를 유지하고자 하는 터키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수출지향의 투자 증대,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1985년 이래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한 이래 총 21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5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및 변경사항

- 터키는 EU의 관세동맹 외에도 1991년 이후 FTA를 통한 수출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FTA를 체결 중에 있으며, 터키는 2013년 4월 기준으로, 1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레바논, 모리셔스 2개국과 협상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의 FTA의 경우 2013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 한편, 터키의 FTA 체결 대상을 살펴보면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등 인근국가들과의 체결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1년 남미의 칠레를 시작으로 요르단, 2012년 아시아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점차 원거리 FTA도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터키의 FTA 체결현황('13.2월 현재)

구분	국가(지역)	연도	비고
1	EFTA	1991	완료
2	이스라엘	1996	완료
3	마케도니아	1999	완료
4	크로아티아	2002	완료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2	완료
6	팔레스타인	2004	완료
7	튀니지	2004	완료
8	모로코	2004	완료
9	시리아	2004	완료
10	이집트	2005	완료
11	알바니아	2008	완료
12	조지아	2008	완료
13	몬테네그로	2010	완료
14	세르비아	2010	완료
15	칠레	2011	완료
16	요르단	2011	완료
17	레바논	2012	완료
18	모리셔스	2012	완료
19	대한민국	2012	완료('13.5.1 발효)

자료 : 터키 경제부

○ 이슬람 개발도상국 8개국 회의(D-8)

- 터키는 이슬람 국가 간의 경제협력확대를 목적으로 국가 간 경제무역협력기구 창설을 선언하고 1997년 1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D-8 각료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1997년 3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고위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여 국가는 터키,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8개국이다.
- 총 인구는 8억 명 정도이고 세계 인구에서 13.5%를 차지하는 D-8은 서방 선진 7개국(G-7)에 맞서는 성격을 지닌다.

○ 회교권 경제협력기구(ECO)

- 1964년 터키·이란·파키스탄 3개국이 지역협력개발기구(Reg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 RCD)로 창설하여 1984년 ECO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92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추가로 가입시켜 지금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 이들 10개국은 1993년 이스탄불 선언에서 무역개발은행 창설 등 8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2000년까지 추진기로 하였으나, 이슬람혁명 이후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경제발전에 주력할 여유가 없고 회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 추후 2000년 3월 6일 ECO 무역기본협정이 체결되었고, 2003년 7월 17일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터키 4개국 간 ECO 무역협정(ECOTA)이 서명되었다.

○ 흑해 경제 협력기구(BSEC :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 흑해연안국의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92년에 결성되어, 이스탄불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터키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그리스 등과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활동은 현재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 회원국은 터키,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총 12개국이다.
- 준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라루시야, 독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미국 튀니스, 프랑스, 크로바티야, 체코, 유럽에너지 컴퍼런스, 흑해클럽이다.
- 흑해경제협력기구에 신규로 참여한 국가들은 1996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요르단, 사이프러스,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이고 1999년에는 헝가리가, 2003년에는 리투아니아가 2006년에는 영국 등이 참여하였다.
- 한반도의 2배 크기에 해당하는 흑해는 석유 및 천연 가스를 비롯한 광대한 에너지 자원이 세계 두 번째 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며, 이를 기초로 탄생한 BSEC은 약 3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 연간 대외교역이 3천억 불 그리고 대략 2천만km² 지역들이 포함된 거대한 지역협력기구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BSEC은 에너지 안보 및 수송차원,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명칭	참여국가
Developing Eight (D-8)	터키,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8개국).
회교권경제협력기구(ECO)	터키, 이란,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10개국
흑해 경제 협력기구 (BSEC :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터키,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12개국

제 4 장 주요산업 동향

1. 개요
2. 산업별 현황

1 | 개요

- 지금까지 터키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은 섬유·의류 산업으로, 터키는 세계 4대 섬유 의류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섬유쿼터제 폐지로 인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산 섬유·의류 제품이 크게 성장하면서 터키의 주력 산업구도가 변화되었다.
- 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시작된 터키의 산업 정책은 주로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터키 제1의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터키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 하지만, 섬유·의류산업 역시 최근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펼치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터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제조업이 매우 취약한 불균형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 서비스업의 비중은 69%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2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 한편, 2011년과 2012년 6월까지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 약 71%대를 유지하고 있다.

2 | 산업별 현황

1. 자동차 산업 및 자동차 부품

- 터키에는 총 18개의 자동차 공장이 활발히 가동 중이며 그 중 12개 사가 외국 단독 투자 혹은 합작 회사다.
- 이처럼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터키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터키의 지리적인 장점으로 인해 유럽 시장은 물론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 인근 지로의 수출 여건이 우수할 뿐 아니라 터키 내수시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 한국의 현대자동차 역시 생산 시설(승용차 2종, 승합차 1종 생산 중)을 갖추고 있으며 터키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관련 부품의 수입 증가로 우리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터키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은 유럽 재정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 중 하나이다. 2011년, 터키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약 130억 달러를 기록하여, 단일 산업분야로써는 가장 큰 금액의 수출을 기록한 분야였으나, 12월까지의 생산과 수출은 지난 해 동기대비 생산은 10.2%, 수출은 7.7% 이상 감소하는 등 재정위기의 여파를 크게 실감하고 있다.

터키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 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910,270	628,970	754,469	790,966	729,966 (△7.7%)
생산	1,147,110	869,605	1,094,557	1,189,131	1,072,978 (△9.8%)
수출비중	79%	72%	68.9%	66.5%	68%

자료 : 터키 자동차협회(OSD)

- 브랜드별 수출량을 살펴보면 총 17개의 자동차 메이커 중 르노社가 약 20만대로 가장 높은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포드社가 17만대로 2위, 우리기업인 현대가 6만 2천대를 기록하여 4위를 기록 중에 있다.
- 한편, 차종별 생산량은 승용차가 37만대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픽업(26만대, 39%), 승합차(1.3만대, 2%)를 차지하고 있다.
- 자동차 부품(일반차량)의 경우, 특정부품 별로는 11월까지 타이어 수요가 약 11억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많은 수요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엔진(2.5억 달러), 배터리(2.2억 달러) 순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기록하였다.

터키 자동차부품 수요동향

(단위 : USD 1백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6,815	5,036	6,595	8,307	1,124
타이어	943	813	988	1,373	1,124
방탄유리	129	90	107	120	111
엔진	105	182,857,086	305	273	253
배터리	194	147	186	232	222
기타	5,441	3,801	5,007	6,308	5,908

자료 : 터키 자동차협회(OSD)

2. 전자제품

- 터키 전자산업은 자동차에 이어 확실한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터키내 소비, 생산, 수출 규모 모두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이 중 백색가전 제품류는 터키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바 특히 EU 시장에서는 최근 유로화 강세 및 터키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등의 영향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전체 백색가전제품 수출의 약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전자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부품의 수입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여건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다.
- 터키의 전기·전자제품은 백색가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백색가전 주요 6개 품목(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오븐)의 경우에는 2011년 연간 생산량 기준 유럽지역 및 인근지역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터키 백색가전업체 아르셀리크가 남아공의 가전업체 디파이를 2011년 3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해외 진출을 추진할 정도로 터키의 전자제품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12년 7월까지의 백색가전 생산대수는 총 185만대를

기록, 2011년 동기의 175만대에 비해 14.5%나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백색가전 산업도 對 유럽 수출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이번 재정위기의 영향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2012년 10월 기준 백색가전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3%가 감소한 1,873천 대를 기록 중에 있으며, 현지 판매 또한 1.7% 감소한 579천여 대를 판매 중에 있다. 한편, 수출도 0.03% 감소한 1,520천 대를 기록 중에 있어, 생산, 현지판매, 수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감소세를 기록 중에 있다.
- 또한 수출이 2012년 7월까지 총 137만대를 기록, 2011년 동기 대비 14% 가량 증가한 반면, 내수판매는 57만대로 1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한편, TV, 컴퓨터 등 흑색가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핵심기술 부족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수입의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남아있다.

3. 섬유산업

- EU시장에 의류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섬유강국이며 2005년 섬유쿼터폐지로 의류의 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통계 상으로는 터키 의류 수출이 2005년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 단가는 전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까지는 터키 의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제조업 종사자의 약 20%를 고용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터키 섬유산업은 저가의 장점을 내세운 중국섬유에 맞서 고부가가치화에 승부를 걸고 있으며, 동 전략이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터키 섬유업계는 브랜드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으며, 중고가 의류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고급 직물을 가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 터키 이스탄불 섬유·의류수출조합(ITKIB)에 의하면, 터키 섬유산업은 최근 글로벌 마켓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은 산업이나, 여전히 터키 GDP의 10%, 산업생산의 20%, 수출의 25%, 제조업 인력공급의 20%를 채용하는 등 터키의 주요한 산업이다.
- 한편, 터키의 발달된 패션 감각과 방직기술을 바탕으로 약 4만 여 개의 관련 기업이 있으며,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약 2백여 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터키정부의 섬유산업 보호 및 개발노력으로 인하여 브랜드화, 고급 의류 생산을 중심으로 업계가 크게 다변화 되고 있어 여전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 터키 섬유산업은 수출이 2011년 기준 총 1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10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나, 2012년 6월까지의 주력 시장인 유럽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출입 모두 약 5%이상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터키 섬유 수출입 동향

(단위 : 십억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1년 (1-9월까지)	2012년 (1-9월까지)
수출	9.49	11.50	5.96	5.82
수입	9.44	10.83	5.88	5.06

자료 : 터키 경제부

제 5 장 한 · 터키 FTA

1. FTA 일반
2. FTA 추진경과
3. FTA 협정문 구조
4. FTA 주요내용
5. FTA 기대효과

1

FTA 일반

-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오는 2013.5.1. 정식 발효되었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기타 협정(서비스·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것이다.
 - 한-터키 FTA 협상은 지난 2012년 3월 협상타결 후 2012.8월 서명됐으며,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절차(외교공한 교환 등)가 2013.3월말 완료되었다.
 -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9번째 FTA로 한-터키 FTA 발효로 터키는 우리나라가 46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된다.
- 인구 7400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터키는 2010~2011년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특히 2011년 기준으로 터키는 한국의 24대 수출국으로, 유럽·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주변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FTA 추진경과

- 2008.1월 터키가 우리와의 FTA 체결 제안
 - 터키의 EU-터키간 관세동맹에 따른 의무 및 한-터키 양국간 교역 확대 차원
- 2008.9~2009.5월 실시된 한-터키 FTA 공동연구에서 양국간 FTA가 양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평가하고 FTA 협상 추진을 권고
- 2010.3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한-터키 통상장관회담)
- 2010.4월부터 2012.3월까지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 2012.3.26 한·터키 정상회담시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협상

타결선언(상기 협정 가서명)

- 2012.8.1 한-터키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 비준동의안 양국 국회통과(우리 국회 : 2012.11.22, 터키 의회 : 2013.1.10)
- 한-터키 FTA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 교환(우리 측 : 2013.2.22, 터키측 : 2013.3.29)
 - 양측간 서한교환이 2013.3월 완료됨에 따라 2013.5.1 발효

3 | FTA 협정문 구조

- 기본협정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정 및 그 밖의 협정으로 구성되어있음. 2013.5.1일에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서비스·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본협정 구성

장(Chapter)	분야
1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2	지식재산권
3	경쟁
4	투명성
5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6	분쟁해결
7	제도
8	예외 및 최종규정

○ 상품무역협정 구성

장(Chapter)	분야
1	일반정의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3	통관 및 무역원활화
4	무역구제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6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4 | FTA 주요내용

- 기본협정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그밖의 협정으로 구성(한·ASEAN FTA 방식)되었다.
 -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키로 합의
- WTO plus 수준의 절차적·실질적 요건 강화로 기체결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 조치 확보되었다.
- 지재권, 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등 분야에서 한·EU FTA 또는 WTO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 타결된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터키로 수출하는 공산품 전 품목의 관세가 7년 안에 철폐된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관세율 3.5~4.7%)·석유화학제품(6.5%)은 즉시, 화학섬유(4%)·직물(8%)은 5년 안에, 자동차(10~22%)·자동차부품(3~4.5%)·컬러TV(14%)·평판압연 제품은 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의 52.5%에 대해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다만,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95개 품목은 협정에서 제외되었다.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악영향이 적은 올리브유·건포도·천일염 등 162개 농산물과 32개 수산물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5

FTA 기대효과

- 한-터키 상품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對 터키 무역수지 흑자 추세에서,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섬유직물,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의 7년내 철폐로 對 터키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한-터키 FTA가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터키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시 한-터키 FTA가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터키의 시장잠재력(유럽인구 2위, 최근 8% 이상 경제성장), 지정학적 중요성(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연결), FTA 네트워크(EU와 관세동맹 및 요르단, 모로코 등 16개국과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0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0.03%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5년간 약 6.3억불, 10년간 약 7.4억불의 교역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對 터키 수출이 크게 증대되어 '09년 이후 증가 추세인 對 터키 무역수지 흑자폭이 더욱 증대(발효 후 5년간 약 4.4억불, 10년간 약 5.13억불)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터키 FTA에 따른 특혜 관세 혜택으로 對 터키 주요 수출품목(승용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의 터키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터키 FTA에 따른 수출입 효과

(단위 : 천불)

산업	5년 총 효과			10년 총 효과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농축산업	14	15,975	△15,961	18	31,713	△31,694
수산물	0	835	△835	0	835	△835
광산품	0.9	55,940	△55,939	0.9	55,941	△55,940
제조업	533,482	22,561	510,921	627,513	26,183	601,329
계	533,498	95,312	438,185	627,533	114,673	512,860

자료 : 관세청

- 한·터키 FTA 발효 후 10년간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1,391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는 단기·장기 공통적으로 고용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농수산물 분야는 발효 후 5년간은 고용이 감소(-136명)하고 10년간은 고용이 증가(29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 생산액 변화로부터 도출한 산업별 고용증가 효과

구분	생산액변화 (2007년 백만 달러)		생산액변화율 (%)		고용증가효과 (명)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농수산업	△10.79	3.17	△0.009	0.003	△136	29
제조업	47.78	429.18	0.005	0.042	18	111
서비스업	76.19	339.97	0.006	0.027	371	1,252
합계	113.18	772.32	0.005	0.032	253	1,391

자료 : 관세청

- 한-터키 FTA 발효 후 10년간 평균 220.6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발효 후 5년간은 연평균 23.9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나, 6-10년간은 연평균 465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어 평균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6 장 외국인 투자환경 및 동향

1. 투자환경
2. 외국기업 투자동향
3. 한국기업 투자진출 동향
4. 특별투자지역

1 투자환경

1. 터키의 지리적 이점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시장

- 터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유럽과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잇는 경제·문화적 가교 기능을 수행
- 경제적으로는 유럽의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수입, 중동 등으로 재수출 또는 가공하여 수출하며 반대로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및 천연자원들을 수입, 유럽지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 문화적으로는 국민의 대다수(약 95% 이상)가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親 서방 정책을 펴고 있어 회교권 국가들과 서방국들의 문화적·사회적 가교역할도 수행

터키 및 인근국가 자원 흐름도



자료 : 터키 경제부

- 또한, 문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해양교통의 연결로에 위치하여 흑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상품 공급지 기능까지도 수행

2. 투자 매력도 및 유의사항

- 터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외부 지향 경제 정책을 추진한 이래 외국인의 對 터키 투자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

對 터키 투자매력

- | | |
|--------------------|------------------|
| ○ 탄탄한 경제 | ○ 인구 |
| ○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 | ○ 자유롭고 혁신적인 투자환경 |
| ○ 인프라 | ○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
| ○ 유럽의 통로이자 터미널 | ○ 낮은 세금 및 인센티브 |
| ○ 1996년부터 EU와 관세동맹 | ○ 규모가 큰 국내시장 |

자료 : 터키투자공사(ISPAT)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빠른 경제성장, 중동 내 2위의 인구규모(내수시장 규모) 등을 내세워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터키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한 여러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터키는 이러한 대외적인 홍보 외에도 2006년 외국인 투자 업체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정함으로써 당초 19개에 이르는 과정을 3개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며 국가 안팎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에 힘썼다.
- 그러나, 기업가, 관료, 정치인들의 결탁에 의한 부정부패가 아직도 만연하며 탈세가 공공연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전근대적 상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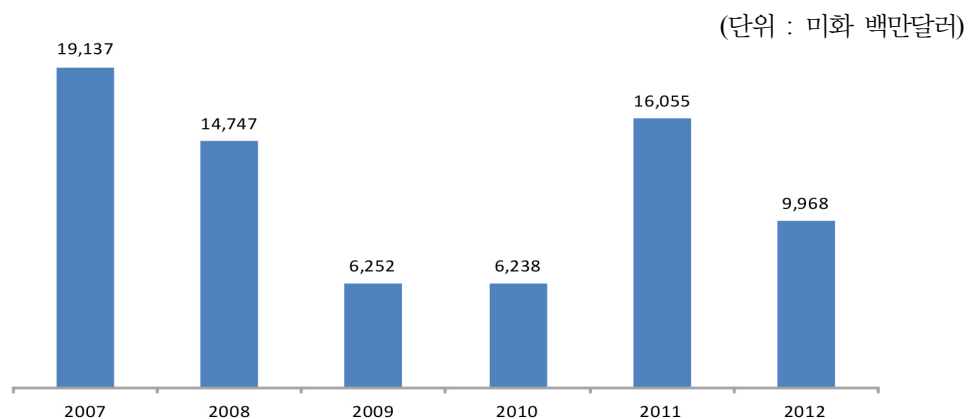
무등록 사업장의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지하 경제의 규모는 5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 외국기업 투자동향

1. 개요

- 터키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총 724억 달러(이하 도착액 기준)의 외국 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였으며(동기간 한국은 453억 달러 유치), 1.T커니에서 발표하는 FDI 신뢰지수(FDI Confidence Index)로는 2010년 세계 23위에서 2012년 세계 13위로 순위가 상승(1위 중국, 2위 인도, 19위 한국)하였다.
- 이와 같이 터키는 최근의 전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투자대상지로 각광받고 있는 시장이지만, 2012년 EU재정위기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2012년 한해 동안 터키에 유입된 FDI 액수는 약 99억 7천만불로 전년대비 37.9% 감소한 금액이다. 2009년 및 2010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감하였던 FDI는 2011년 다시 회복 추세로 돌아섰으나, 2012년 주된 투자유치선인 EU지역의 재정위기로 말미암아 다시 감소하였다.

연도별 對터키 FDI 유입액



자료 : 터키 중앙은행(CBRT)

2. 국별 유치동향

세계 주요국가 및 지역별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단위 : 미화 백만불)

국가명	2011년	2012년	증감률(%)
유럽	12,549	7,722	-38.5
영국	904	1,996	120.8
네덜란드	1,425	1,176	-17.5
룩셈부르크	555	1,250	125.2
독일	665	532	-20.0
오스트리아	2,418	1,491	-38.3
스위스	233	445	91.0
중동	1,516	1,169	-22.9
아제르바이잔	1,266	339	-73.2
레바논	45	315	600
북미	1,484	456	-69.3
미국	1,402	404	-71.2
아시아	497	615	23.7
말레이시아	15	461	2,973.3
일본	228	33	-85.5
중국	9	10	11.1
홍콩	163	39	-76.1
한국	52	56	7.7

자료 : 터키 중앙은행

- 2012년 터키의 주요 외국인 투자국은 유럽국가가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럽발 對 터키 외국인 투자는 EU 재정위기로 인해 2012년 77.2억불로 전년대비 38.5% 감소.
- 영국의 對 터키 투자액은 2012년 약 20억불을 기록, 전년 9억불 대비 120.8% 증가하며 2012년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 되었다.

3. 산업별 외국인 투자동향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단위 : 백만불)

업종	2011년	2012년	증감률(%)
농림수산업	32	38	18.8
광공업	7,965	5,433	△31.8
광업	146	214	46.6
제조업	3,573	4,331	21.2
식음료 및 담배	648	2,139	230.1
섬유	148	376	154.1
정유	1,255	178	△85.8
기초화학	348	516	48.3
고무플라스틱	128	414	223.4
금속가공	292	192	△34.2
기계장비	76	32	△57.9
전기전자	442	164	△62.9
운송장비	93	147	58.1
전기가스	4,244	888	△79.1
서비스업	8,058	4,497	△44.2
건설	301	1,338	344.5
도소매	709	198	△72.1
운송창고	223	125	△43.9
숙박요식	122	19	△86.9
정보통신	36	104	188.9
보험 및 연금	881	290	△81.2
은행	5,882	1,400	△76.2
부동산	300	302	0.7
보건복지	231	545	135.9
지주회사	170	160	△5.9
오락	13	81	523.1
교육	68	48	△29.4
과학기술	103	53	△48.5

자료 : 터키 중앙은행

- 2012년 터키의 FDI는 전체적으로 37.9%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상당한 증가세에 있다.
- 반면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FDI는 전년 대비 44.2% 감소한 약 45억불을 기록하여 EU 재정위기로 인한 영향이 서비스업 FDI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4. 주요 외국인투자 사례

- 2012년 2월 자동차 브랜드 르노(프랑스)를 시작으로 대규모 투자사례를 살펴보면 주요산업인 자동차 및 섬유 분야는 물론 최근 터키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에너지 및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2년 주요 외국인 투자 사례

투자자	국가	금액 (백만 달러)	투자내용
Aditya Birla	인도	510	섬유공장 건설
Baxter	미국	170-180	신약개발 및 생산라인 설치
Edge Capital	레바논	250	부동산 산업 투자
GE	미국	900	의료, 에너지, 인프라 투자(3년)
Socar	아제르바이잔	10,000	발전설비 및 수송설비 투자(8년)
Ford	미국	1,000	자동차공장 증설
Aereports de Paris	프랑스	874	TAV Airports Holding 주식 38% 취득
Ferrero	이탈리아	95	초콜릿공장 건설
Renault	프랑스	254	자동차 공장 증설

자료 : 터키 경제부, 투자청

3 한국기업 투자진출 동향

1. 일반 현황 및 특징

- 한국 기업의 對 터키 투자는 1980년 대 초반 이후 종합상사를 필두로 시작되었으나, 실제 투자 또는 진출은 1992년 전자저울 제조기업인 카스(CAS)가 최초로 터키 시장에 생산기지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 이후 1997년 현대자동차, 2000년 LG전자(에어컨생산법인)가 협력업체들과 함께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제조업 투자가 시작되었다.
- 2012년 현재, 주로 대기업 위주로 진출하여 있으며, 자동차(및 부품), 전자제품(및 부품), 섬유(스판텍스), 철강(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전동차량, 담배 등의 분야에서 약 20여개의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운영되었다.

한국의 對 터키 투자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누 계
금액 (신고건수)	247,086 (45)	66,636 (30)	135,842 (39)	291,995 (43)	<87~12> 1,209,167 (297)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신고기준)

2. 지역별 주요 진출기업

지역	회사
이스탄불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중합상사, LG전자, LG DISPLAY, LG화학, 대우 인터네셔널, 카스,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효성, 대한항공, TK CHEMICAL,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KT&G, KCC, 범한판토스, 글로벌비스, 솔상무역, YG-1, 귀뚜라미보일러, 파카유로, STX 등
이즈미트, 게브제 등	LG-ARCELIK, 한일아산, 한라공조, 만도, CJ, 일진, 우리텍, 호원, SIMPAK, 성진사, 한일 C&F, SKMT, 현대자동차공장, KCC공장,
데킬다 등	미스도스, 대양금속(SK), 효성공장
이즈미르	KT&G 공장
아다나	경인양행
앙카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4

특별투자지역

1. 기술개발특구(Technology Development Zone; TDZ)

- 기술개발특구의 조성목적은 R&D 활동지원 및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이며, 하이테크 분야의 기업에 한해 입주가 허용되며 투자액 제한은 없다.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소프트웨어 및 R&D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 TDZ에서 생산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한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VAT 면제(시스템 관리, 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다양한 비즈니스 부문, 인터넷, 휴대폰, 군사 명령 제어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포함)
- 특구에서 근무하는 연구원과 소프트웨어 및 R&D 직원 급여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세금 면제 단, 대상이 되는 지원 인력의 수는 R&D 직원 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현재 총 27개 TDZ가 운영중이며 12개는 조성이 진행중으로, 앙카라에 6개, 이스탄불에 5개, 코자엘리에 3개의 TDZ가 소재

〈터키내 TDZ 소재지역〉



자료 : 터키투자공사(ISPAT) 홈페이지

2. 계획산업단지(Organized Industrial Zone)

- 계획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은 기업들에게 인프라와 사회적 설비가 갖춰진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입주요건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부지 매입 시 부가세 면제
- 공장 완공 후 5년간 부동산세 면제
- 용수, 천연가스, 통신 비용 절감 혜택 제공
- 부지 통합 및 분리에 대해 전체 비용의 0.54%를 차지하는 세금 면제
- 공장 건설 및 사용에 대해 지방세 면제
- OIZ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고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고체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면제

- 현재 터키내 81개주 중 80개 주에 263개의 계획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148개가 운영 중이며 115개는 조성작업이 진행 중이다.

〈터키내 산업특구 소재지역〉



자료 : 터키투자공사(ISPAT) 홈페이지

3. 자유무역특구(Free Zone)

- 자유무역 특구의 조성목적은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구역에 수출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일반 관세 지역에 적용되는 통상, 금융, 경제 부문 과 관련된 법적, 행정적 규제는 자유무역특구에 적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입주요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관세 및 기타 의무세 100% 면제
- 제조 회사에 대한 법인세 100% 면제
-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 100% 면제
- 직원 임금에 대한 소득세 100% 면제(자유무역특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FOB 가격에서 최소 85%를 수출하는 기업에 한함)
- 기간 제한 없이 자유무역특구에 상품 보관 가능
- 자유무역특구에서 발생한 기업 수익을 터키뿐만 아니라 해외로 제약 없이 이전 가능

○ 터키가 구축한 20개의 자유무역특구(19개 특구 운영 중)는 지중해, 에게해, 흑해의 주요 항구에 인접해 있고, EU 및 인근 중동 시장과도 가까워 국제 무역 경로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터키내 자유무역특구 소재지〉



자료 : 터키투자공사(ISPAT) 홈페이지

제 7 장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1. 주요 투자법 내용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1 주요 투자법 내용

1. 터키 투자법

- 터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투자자들의 권리보호, 국제 기준에 따른 투자 및 투자자의 의미 정의,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외국인 투자법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7월에 인센티브 제도를 비롯한 55년 만에 대폭 개정된 터키 상법이 발효.
- 터키 외국인직접투자법의 기본 원칙은 내외국인 동등대우이다. 따라서, 수출 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 의무 등 제한이 없고, 과실 송금도 보장되며 자본금의 외화 구좌 납입도 보장된다.
- 한편, 터키의 외국인직접투자법에는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 또는 장려책을 두고 있다. 일부 산업은 국가독점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또 다른 일부 산업은 투자 장려산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목표 중 하나는 EU 법령과의 일치이며 이를 통해 터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하려는 의도가 있다. 1인 주주회사의 인정으로 외국기업의 단독 투자 기업설립이 용이해져 외국인투자기업 및 중소기업 설립은 유리해졌다.
- 애초 개정안에는 거래감사 제도, 재무정보의 웹사이트 공개 의무화 등이 도입되었으나 최종단계에서 삭제되어, 한국 업체들이 터키 기업과의 거래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인 상대방의 신용정보 입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상법 개정내용

- **주식회사 설립관련 규정 변화**
 - 최소주주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시 기존 최소 5명/2명의 주주(사원)가

필요했으나, 개정 후 1명의 주주(사원)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최소자본금
 - 비상장회사 : 최소 주식자본금 5만(터키)리라/등록자본금 10만리라
 - 상장회사 : 5만 리라(\$1=1.8터키리라 2013년 2월 현재)
- 회사 및 자본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 발기인의 신고의무가 도입되었으며, 발기인의 현물출자를 했거나 기업이 인수되었을 때는 신고내용에 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사설립 시 설립의무에 대한 특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인 주주 회사 관련 규정
 - 1인 주주(사원)은 상법상 이사회 구성 등 주주총회가 갖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기존에 복수 주주가 있는 회사가 1인 주주회사로 축소되더라도 이상이 없다.
- 이사회 구성원 관련 규정
 -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은 터키에 거주하는 터키국민이어야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다.
 - 주주만이 이사가 될 수 있는 구상법 조항은 폐지되었으며,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

3. 투자 제한 분야

- 터키의 외국인직접투자법은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요건들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 라디오 TV 방송(방송법 Law No : 3984)
 -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EU에서 2009~2013년까지 외국인 지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국내 민간 항공(항공법 Law No : 2920)
 - 터키 내에서의 승객, 화물 및 우편의 수송은 터키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가능.
- 국내해운(해운법 Law No : 815)
 - 터키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터키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
 -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터키 국민들만 수행이 가능.
 - 예외적으로 터키 국적 선박에 없는 특수 목적 선박의 경우 외국 선사들이 최소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허가 취득이 가능.
- 선박 소유(무역법 Law No : 6732)
 - 터키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터키 국민이어야 가능.
- 전화 및 전보 서비스(통신법 Law No : 406)
 - Turk Telekom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4년 6월 16일 부로 투자 제한 해제.
 -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터키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투표권만 보유)
- 정부 조달(정부조달법 Law No : 4734)
 - 정부 조달 관련 입찰 시 외국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터키산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음.
- 수산업(수산물법 Law No : 1380)
 -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터키 국민에게만 부여됨.
 - 양식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이 2003.7.22일부로 해제됨.
- 요트 선착장(관광 촉진법 Law No : 2634)
 -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터키 국민 또는 터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함.
- 인력알선회사(고용법 Law No : 4904)

- 터키 국민만 인력알선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사설 경호 서비스법 : Law No : 5188)
- 터키 국민만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를 설립 가능.

4. 투자 장려 분야

- 한편, 터키 외국인직접투자법은 외국인투자를 장려해야 할 산업들도 따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장려산업 및 분야들은 기타 산업들에 비해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 받게 된다.

- 광업
- 테스트센터, 풍동 및 유사한 시설 투자
- 승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한 철도 및 해운시설 투자
- 관광진흥지역에 대한 관광업 투자
- 초, 중, 고 학교에 대한 민간 투자
- 특정 의료분야 및 방위산업에 대한 총액 2,000만불 이상의 투자

2 | 투자 인센티브 제도

2004년부터 터키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분야 보다 투자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인센티브법 개정을 통하여 터키 전 지역을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확대 구분하여 개발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지정의 의도는 낙후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가장 개발이 많이 된 1지역(이스탄불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행 대비 축소되고 가장 낙후된 6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2012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제조 서비스, 에너지 부문 및 수출 관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는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건부터 소급적용된다. 이 제도는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1. 투자 인센티브 제공내역

○ 조세감면

- 위에서 언급한 지역, 대규모 투자, 전략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며, 인센티브는 크게 세금감면(법인세,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이자지원, 토지 지원 등으로 나뉜다.
- 한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로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제공 위에 대규모 투자 또는 전략산업 투자가 있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세금감면 기준 투자분담금 비율

지역	세금감면 기준 투자분담금 비율(%)			
	지역인센티브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2013.12.31.일 이전 개시된 투자	2013.12.31일 이전 개시된 투자	2013.12.31일 이전 개시된 투자	2014.1.1일 이후 개시된 투자
I	15	10	25	20
II	20	15	30	25
III	25	20	35	30
IV	30	25	40	35
V	40	30	50	40
VI	50	35	60	45

주 : 투자액대비 투자 실현 액 비율로 세액공제 한도 및 세율인하 적용의 한도

지역인센티브에 따른 세금감면 내역

지역 인센티브에 따른 세금감면 내역(2013.12.31일 이전 개시분)				
지역	투자분담금 비율(%)	세금인하율 (%)	투자기간/운영기간 중 세액공제 비율**	
			투자기간	운영기간
I	15	50	0	100
II	20	55	10	90
III	25	60	20	80
IV	30	70	30	70
V	40	80	50	50
VI	50	90	80	20

주 : 총 세액공제액을 100%라 할 때 투자기간/운영기간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비율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내역

대규모 투자를 위한 세금 감면(2013.12.31 이전 투자 개시분)				
지역	투자분담금 비율(%)	세율인하율(%)	투자기간/운영기간 중 세액공제 비율**	
			투자기간	운영기간
I	25	50	0	100
II	30	55	10	90
III	35	60	20	80
IV	40	70	30	70
V	50	80	50	50
VI	60	90	80	20

주 : 총 세액공제액을 100%라 할 때 투자기간/운영기간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비율

○ 국가보조금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지원내역

지역	2013.12.31일 이전 개시된 투자	2014.1.1일 이후 개시된 투자	지원한도액 (고정투자액 대비 %)	
			지역인센티브	대규모투자 추가지원
I	2 년간	-	10	3
II	3 년간	-	15	5
III	5 년간	3 년간	20	8
IV	6 년간	5 년간	25	10
V	7 년간	6 년간	35	11
VI*	10 년간	7 년간	50	15

주 : 6지역 OIZ 입주기업의 경우 12 년간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근로자 부담분 지원내역

구분	법정기준액(TL)	감면액(TL)
최저임금(2012년 상반기)	886,50	-
종업원 사회보장세 부담분(14%)	124,11	124,11 "
실업보험료 부담분(1%)	8,87	-
종업원 소득세 감면분	113,03	113,03 "
인지세	5,85	-
종업원 부담액 총계	251,86	-
종업원 순수령액	634,64	-
사용자 사회보장세 부담분(19.5%)	172,87	172,87
실업보험료 부담분 (2%)	-	17,73
사용자 총 부담액	1,077	410,01

주 : 최저임금은 6지역만 해당

이자비용 지원

지역	이자율 감면(%)		최대지원한도액(천 TL)
	TL화 대출	외화 대출	
I			
II	-	-	-
III	3 point	1 point	500
IV	4 point	1 point	600
V	5 point	2 point	700
VI	7 point	2 point	900

○ 국책 R&D 지원사업 선정

- 한편, 지역 및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외에도 터키 정부에서는 전략산업(투자 장려 분야와 동일)을 선정,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의 경우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터키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은 물류, 관광, 교육 등의 서비스업이 중심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R&D 시설 또는 의료, 방위산업 등이 있다.

2. 투자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사유

터키 광역 지자체별 투자지역 구분



○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 터키의 투자지역은 개발 정도에 따라 6개 지역으로 구분, 가장 개발된 지역은 1지역으로 구분되어 가장 적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며, 가장 낙후된 6지역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역구분	광역지자체명
1지역(빨강색)	Ankara, Antalya, Bursa, Eskisehir, Istanbul, Izmir, Kocaeli, Mugla
2지역(노랑색)	Adana, Aydin, Bolu, Canakkale, Denizli, Edirne, Isparta, Kayseri, Kirklareli, Konya, Sakarya, Tekirdag, Yalova
3지역(파랑색)	Balikesir, Bilecik, Burdur, Gaziantep, Karabuk, Karaman, Manisa, Mersin, Samsun, Trabzon, Usak, Zonguldak
4지역(초록색)	Afyonkarahisar, Amasya, Artvin, Bartin, Corum, Duzce, Elazig, Erzincan, Hatay, Kastamonu, Kirikkale, Kirsehir, Kutahya, Malatya, Nevsehir, Rize, Sivas
5지역(하늘색)	Adiyaman, Aksaray, Baybur, Çankiri, Erzurum, Giresun, Gumushane, Kahramanmaras, Kilis, Nigde, Ordu, Osmaniye, Sinop, Tokat, Tunceli, Yozgat
6지역(주황색)	Agri, Ardahan, Batman, Bingol, Bitlis, Diyarbakir, Hakkari, Igridir, Kars, Mardin, Mus, Siirt, Sanliurfa, Simak, Van

자료 : 터키 경제부, 투자청

○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외에도 터키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산업 부문에 따라 최소 투자액을 설정하여 최소투자액 이상 투자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해당하는 산업분야는 대부분 터키의 주요산업 분야로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이며 비교적 발달이 미진한 의료 및 제약분야도 대규모 투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최소투자액 기준(2013년 2월기준)

해당산업부문	최소투자액
화학	2억 터키리라
석유산업	10억 터키리라
파이프라인 서비스	5천만 터키리라
자동차 생산	2억 터키리라
철도차량 생산	5천만 터키리라
항만서비스	2억 터키리라
전자	5천만 터키리라
의료 및 광학기기	5천만 터키리라
제약	5천만 터키리라
항공우주산업	5천만 터키리라
기계산업	5천만 터키리라
광석 처리 설비 및 통합 금속 제련업 (광업법 제3213조에서 규정하는 IV/c 그룹 금속)	5천만 터키리라

자료 : 터키 경제부, 투자청

3. 투자 인센티브 세부적용 내역

공제법인세액 및 세율 산출예시

투자액 (천TL)	5000	5000	5000	5000	5000
세율인하비율 (%)	55	60	70	80	90
투자분담금비율(%)	20	25	30	40	50
총세액공제가능액(천TL)	1000	1250	1500	2000	2500
투자기간(천TL)	(10%)100	(20%)250	(30%)450	(50%)1000	(80%)2000
운영기간(천TL)	(90%)900	(80%)1000	(70%)1050	(50%)1000	(20%)500
실현투자액이 투자 분담금 비율에 도달할 때까 지 적용되는 감면법인세율 (원세율 20%)	9% (원세율 대비 55% 인하)	8%	6%	4%	2%

전략부문 투자 인센티브 내역(모든 지역 해당)

인센티브 항목	지원내역
부가세 및 관세 면제	해당
세금감면 한도액 (총 투자액 대비 %)	50%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지원 기간	7년(6지역의 경우 10년)
토지 지원	해당
사업장 건설 관련 부가세 환급	건물건설 용도의 5억 TL 이상 투자 대상
이자비용 지원	투자금액의 5% 한도내에서 최대 5천만 TL한도
근로자 소득세 면제 기간	6지역에 한하여 10년간
고용주세 근로자 부담분 면제 기간	

지역별 인센티브 적용 내역

지원항목/지역		I	II	III	IV	V	VI
부가세면제		O	O	O	O	O	O
관세면제		O	O	O	O	O	O
세금감면 한도액 (총 투자액 대비 %)	OIZ외	15	20	25	30	40	50
	OIZ내	20	25	30	40	50	55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지원 기간	OIZ외	2 년	3 년	5 년	6 년	7 년	10 년
	OIZ내	3 년	5 년	6 년	7 년	10 년	12 년
토지 지원		O	O	O	O	O	O
이자비용 지원		불가	불가	O	O	O	O
근로자 소득세 면제기간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0 년
사회보장세 근로자 부담분 지원 기간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0 년

제 8 장 투자 진출 형태별 절차

1. 투자방식
2. 투자 진출 형태별 절차

1 투자방식

1. 현지법인

- 현지법인은 투자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구분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자본 : 50,000TL(약 US\$ 33,333) - 최소주주 : 최소 5인 이상 - 이사회 : 최소 3인으로 구성, 구성원은 주주들에 의한 선출 또는 정관에 의해 지정 - 상장 : 주주 250인 이상, 금융업의 경우 3,000만TL(약US\$ 2,000만)의 자본금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자본 : 5,000 TL(약 US\$ 3,333) - 발기인 : 최소 2인에서 최대 50인 - 경영인 : 전권 위임 경영 - 이사회 : 없음(경영인 전권 위임) - 비고 : 금융업과 보험업 진출불가 자본금의 1/4은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현금 납부, 나머지는 3년 이내에 납부 필요

2. 지사(Branch Office)

- 외국기업 지사는 투자법 상 터키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익과 관련 하여 터키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한국과 터키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현지지사 또는 한국 본사에서 세금 납부 시 한국 또는 터키에서 이중으로 납세할 의무는 없다. 터키 내 지사의 설립도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지사 설립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외국인은 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재무성 경제부 산하 DFI(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의 승인을 얻은 후 터키에 연락사무소(단, 금융업 및 보험업 등은 특별법에 의해 관계당국 및 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함)를 개설할 수 있다.

1. 회사설립절차

○ 현지법인

- 외국인투자자의 법인설립 절차는 기본적으로 내국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현지법인 설립절차

NO	구분	비고
1	회사 정관 공증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업 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 제출	터키 전역에 분포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정관 공증서류(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어로 공증을 받은 회사 정관 3부(원본 1부 포함)를 공증일자 기준으로 최소 15일 이내에 여타의 필요 서류와 함께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 자본금 납부 확인 증명서(은행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0.4%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데, 동 금액에 대한 납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소비자 보호 기금 납부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또는 판매 하는 제품 성격에 따라 소비자 보호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주로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소비되는 영역의 경우 납부가 필요함. - 소비자 보호기금은 자본금의 0.1%. ○ 기타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등기소 제출용 신청서 - Establishment statement 5부 - 대표자 서명 신고서 및 여권 사본(공증본) - 주주(발기인)의 사진 및 여권 사본 - 터키 상업등기규정 준수 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 준비 비용 - 유한책임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정관 : 900TL · 서명신고서 : 22TL (1인당, 2document) · 신분증 복사 : 11TL(1인) -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정관 : 200TL · 서명신고서 : 22TL(1인당, 2 document) · 신분증 복사 : 11TL(1인) ○등록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3 TL(한 사람만 등록될 경우) - 추가 인원을 등록할 경우 한 사람당 127 TL의 추가 비용 발생
3	세무서(Tax office) 등록	무료
4	'상업등기관보(Trade Registry Gazette)'에 등록 내용이 공지된 이후 본격적인 영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등기관보 등록 비용 137.5 TL(평균) - 66~340 TL

○ 지사(Branch Office)

- 지사 설립의 절차는 터키 통관무역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상업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절차

NO.	구분
1	- 터키 통관무역부에 서류 제출
필요서류	- 지사 설립신청서 -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회사명, 국적, 설립일자, 주소, 자본금, 영업분야 등 필수 기재 - 본사의 지사 설립 결의서 공증본 - 회사 정관 원본 공증본 - 본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 증빙 서류 - 본사의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 대표자 서명 신고서 및 여권 사본(공증본) - 터키 상업등록규정 준수 서약서
2	상업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에 서류 제출
필요서류	- 상업등기신청서 -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지사 설립 허가서 - 지사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공증본 - 본사에서 발행한 지사대표자 승인 및 직위 승인서
3	세무서(Tax office) 등록
4	‘상업등기관보(Trade Registry Gazette)’에 지사 등록 내용 공지→ 본격적인 영업활동 시작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외국인은 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무성 경제부 산하 DFI(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의 승인을 얻은 후 터키에 연락사무소(단, 금융업 및 보험업 등은 특별법에 의해 관계당국 및 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함)를 개설할 수 있다.
- 한편, 연락사무소 설립은 현지법인 또는 지사와 달리 신청 후 5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 되어야 하며, 연락사무소는 최대 3년간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NO.	구분	비고
1	외국인투자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dersecretariat of Treasury)에 필요서류 제출	전화: 90-312-212-5880 웹사이트: www.treasury.gov.tr
필요 서류	- 본사의 종업원 수 및 연 지출 추정치를 증빙할 수 있는 'Certificate of Activity'(영업활동증빙) 원본 - 본사의 영업활동보고서 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 본사에서 발행한 터키 연락 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승인서 - 연락사무소 설립을 법적으로 진행할 사람에 대한 위임장	소요기간 : 5일 내외
3	- 세무서(Tax Office)에 등록	1달 이내, 무료

2.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 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현금으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¹⁾,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14호 서식)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산 후의 분배잔여재산을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청산보고를 필한 후 해외에서 운용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한 경우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여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 9 장 조세제도

1. 소득세(income taxes)
2. 법인세(CORPORATE TAX)
3.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es)
4.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5. 금융 및 보험 거래세(banking and insurance transaction tax)
6. 인지세(stamp duty)
7. 통신세(communication tax)
8. 상속세(inheritance)와 증여세(gift tax)
9. 부동산세(property tax)
10.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

터키의 조세체계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이듬해 4월말까지이다. 참고로 한국과 터키 간에는 이중 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소득세 및 법인세는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1. 소득세(income taxes)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2. 소비 관련세(taxes on expenditure)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은행보험거래세
- 인지세 ○ 특별통신세

3. 재산 관련세(taxes on wealth)

- 상속증여세 ○ 재산세 ○ 자동차세

1 | **소득세(income taxes)**

1. 개요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터키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개인은 자연인을 말하며 공동사업체는 소득세 적용에 있어 하나의 개인으로 보며, 각 구성원은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기본세율은 소득구간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35%이다. 소득계층분류 (income-bracket)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된다.

2. 소득의 구분

- 소득세는 종합과세한다. 소득의 원천은 7가지로 분류된다.
 1. 사업소득, 2. 농업소득, 3. 근로소득, 4. 인적용역소득, 5. 임대소득, 6. 이자 및 배당소득, 7.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앞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으로 주로 자본이득과 일시적인 거래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

- 일반적으로 거주자 여부에 따라 개인의 납세의무 범위가 정해진다.
- 소득세의 주체는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다.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터키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 터키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한 무제한 적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한 사업목적이나 교육상의 목적 또는 휴가나 건강 치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터키 내에 있다하더라도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4. 신고의무 면제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연간 임대소득 YTL3,200
 - 원천징수한 근로소득(근무처가 하나인 경우)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 내국법인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저작권, 특허권으로부터의 소득(작가, 화가, 작곡가 등)
 - 소정의 연금과 사회보장액
 - 퇴직급여액(3,129.25 TL for the first half of 2013)
 - 주식처분에 따른 자본이득(2년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일 것)

5. 과세 대상

소득세는 7가지의 소득으로 구분되어 합산과세되는 바 소득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 사업소득은 상업적이거나 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가 포괄적이고, 대부분의 상업상이고 산업 활동을 과세대상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업활동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고 있는 자가 행한 활동은 상업적, 산업활동으로 보지 아니하기에 소득세가 면세된다. 또한 해당 사업 활동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시적인 활동은 상업적이거나 산업 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시적인 활동을 기타소득으로 다루고 있다.
- 세법에서는 각 상업상이고 산업 활동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단지 상법(Turkish Commercial Law)에서의 사업범위를 적용한다.
-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2 가지가 있다.
 - 일괄방식(lump sum basis)
 소득세법에 일괄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한다. 일괄방식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는 회계장부를 보관하거나 실질계산에 의해서는 과세소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이다. 이 경우 소득세는 법에 의해 결정된 추정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결정된다.
 - 실질방식(actual basis)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에 대해 회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발생하거나 지급된 비용이 공제된다.
- 공제 가능비용(deductible expenses)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필요경비는 공제된다.

- 일반적인 비용(general expenses)
- 종업원에 대한 식대(food and boarding expenses)
- 의료비와 약 구입비
- 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 작업복 상당액(clothing expenses)
- 손실, 손해, 그리고 배상금(계약서, 재판판결 등에 의한)
- 차량유지비(사업관련)
- 각종 공과금
- 감가상각비
- 공제 불가능비용
 - 대표자, 또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적 비용
 -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월급여, 봉급, 보너스
 - 대표자 출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 불법 행위(unlawful)로 인한 벌금(fines)과 세금
 - 광고지출액(알코올과 알코올성 음료 광고료, 담배 관련 광고비)

2) 농업소득(agricultural profits)

- 농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농업활동은 땅, 내수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작, 재배, 어업, 수렵 등의 활동을 포함하며 과세 정책상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부(farmers)로 정의하며, 법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소농에게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 이외 농부들은 매년 내각령으로 정하는 수확량 이하를 거둘 경우 법에 의거한 추정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이상의 수확량을 거두면 실제 수입 및 비용에 의거하여 소득을 산출, 과세된다.
- 농업활동의 규모나 총수입이 소득세법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영세농민 (Small farmer)이기에 소득세가 면제된다.
- 그 외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농업가는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2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 각료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에서 지정한 금액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는 자는 일괄방식(lump sum basis)에 의해 소득이 결정된다. 이 경우 수입금액은 실질방식에 의해 계산되고 비용은 추정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 가축, 가축생산품, 어획 등에 판매에 의한 수익에 대해 80%의 비용을 적용하며, 그 외 다른 농업생산물에 대해서는 70%를 적용한다.
- 그에 반해 실질방식에 따를 경우 회계장부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 농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은 다음과 같다.
 - 생산 또는 구매한 농업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수익
 - 농업기계와 장비를 농업활동에 사용하고 반환시 받은 수익
 - 손상된(damaged) 농작물에 대해 수령한 보상액

3) 급여 그리고 임금(salaries and wages)

- 종속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급여 및 수당 뿐만 아니라 팁, 수수료, 보상금, 프리미엄 등을 포함한다.
- 과세소득 계산시 다음의 비용은 공제된다.
 - 다양한 법과 규정에 의한 법정 공제액(legal deduction)
 - 연금보험료
 - 각종 보험료
 - 노동조합에의 지불액

4) 독립적인, 전문적인 용역소득(independent professional services)

- 개인이 독립적인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변호사, 회계사, 의사, 컨설턴트가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 연간 수입과 비용은 간편장부(a simple accounting book)에 기록하여야 한다. 용역 소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공제되지만, 공제가능비용의 범위는 사업소득에

서 명시된 비용의 범위보다는 작다.

- 공제가능 비용
 - 용역이 이뤄지는 장소의 임차료
 - 경상비(overhead expenses)
 - 직업관련서적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
 - 관련 협회에의 지급액
 - 여비교통비
 - 감가상각비
 - 퇴직급여

5) 부동산 소득(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영구임차권을 말한다. 상선, 보트, 비행기와 유사한 교통수단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 이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다음의 수익으로 구성된다
 - 토지, 건물, 매장물, 자원,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광업권의 임대소득
 - 독립적인 임차권이 있는 자산에 대한 임대소득
 - 상선, 보트, 비행기,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임대소득
- 수익에 상응하는 유지,보수,운행,상각비용은 공제되며, 실제 비용 대신 총 비용의 25% 상당액(lump-sum deduction)을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6) 동산소득

- 동산소득은 이자, 배당, 자본의 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산소득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
 - 법인의 사전단계에서 주주에게 지급한 보상액

- 투자펀드 등으로부터 발행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수익
- 유한회사, 합작회사,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액 등

7) 기타 수익과 소득

- 일시적인 사업활동, 독립적인 인적용역 제공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 6가지 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6. 공제액

- 터키 소득세법상 각각의 소득구분에 따라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는 바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 설립비용(사업소득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 연금과 사회보험료
 - 근로소득에서 다음의 수입은 비과세된다.
 -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사망, 질병, 불능, 교육 등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공제된다. 다만 해당 보험회사는 터키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회사 구내에서 제공하는 식사
 -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편
 -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회사 소유이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사망, 불능, 질병 그리고 실업에 따른 보상액
 - 결혼, 출산에 따른 지원금(두달의 급여 한도내에서)
 - 정부기관, 공공단체에의 기부금(소득의 5% 한도)
 - 생명, 불능, 출산 등에 다른 보험료(15% 한도)
 - 단 비거주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교육, 건강 관련 비용(10% 한도)
 - 근로소득자에 한해 교육, 건강, 임차, 식료품, 의료비의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 사회보장료

- 모든 사용자는 사회보장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재해, 질병, 출산, 불능, 노령, 사망 등에 대한 것이다.
- 현재 근로자는 14%이며, 고용인은 19.5%~25%이다.

- 실업 기금

- 실업보장기금은 근로자 1%, 고용주 2% 만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적으로 1%를 부담한다. 이 제도 하에서 근로계약이 체결자 근로자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있다.

7. 소득세율(2013년 기준)

○ 최저 15%에서 누진적으로 35%세율이다.

- 일반세율(고용소득은 제외)

과세표준	세율(%)
0~10,700 TL 이하	15
10,701~26,000 TL	20
26,001~60,000 TL	27
60,001 TL 이상~	35

- 고용소득 세율

과세표준	세율(%)
0~10,700 TL 이하	15
10,701~26,000 TL	20
26,001~94,000 TL	27
94,001 TL 이상~	35

- 유의할 사항은, 위 소득구간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의 연간 누적소득이 1만 700TL 미만일 경우 15% 세율이 적용되다가 누적소득이 1만 700TL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20%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즉, 월 급여가 2,000TL인 회사원이 있을 경우 5월까지의 소득세율이 15%이나 누적소득이 1만 700 TL을 넘어서는 6월부터는 20%가 적용되는 식으로 이는 기업체의 소득세 원천 징수 업무에 혼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8. 원천징수신고

-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하고 26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인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분기별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신고서, 신고, 납부

- 소득세 신고서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3월과 7월에 분납하여 납부한다.
- 비거주자는 터키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신고 요건 및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급여 및 용역, 권리의 양도, 이자, 임차료,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부동산 양도소득과 동산소득은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요

- 법인세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과 유사하며 2006년 법인세법이 개정(New Corporate Tax Law No:5520)되어 법인세율은 20%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3년도 법인세율도 20%이며, 중간에 개정된 내용이 터키 국세청에 게시된 내용은 현재까지 없음. 2005년 귀속 법인세율은 30%였다.
- 법인세는 기업에 의해 파생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세 납세의무는 민간기업, 공기업, 협회 등이 소유한 기업, 조인트 벤처이다. 터키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현지법인 및 지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단순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납세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에 따르면 터키에 본사가 있거나 실제 영업지역이 터키인 법인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사가 있거나 실제 영업지역이 외국인 법인은 터키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 한편, 배당 소득세의 경우, 한-터키 조세조약에 따라 25% 이상의 주식 소유 배당세율은 15%로, 25% 미만의 주식소유 배당세율은 20%로 적용 한다.

2. 납세의무자

- 터키 내에 본점이 있거나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 국내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그 외 법인은 터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납세의무를 진다. 세법상 규정된 법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 조합
 - 공공기관
 - 공기업
 - 합작회사

3. 과세대상 소득

-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결정에 있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결정하는 과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비용은 마찬가지로 법인의 과세소득 결정시 공제되며, 다음의 비용은 과세대상소득 계산시 차감된다.
 - 주식 및 사채의 발행에 소요된 비용
 - 초기 법인설립비용
 - 합병 & 청산 비용
 - 이월결손금
 - 승인된 단체와 학교, 병원, 기술연구 등에의 기부금(5% 한도)
 - 사회보험료, 의료비
 - 부동산에 관한 세금, 인지세, 등록세 등
 - 특허권, 지적권 등에 대한 로열티 지불액
 - 사업관련 여비교통비
 - 노동단체에 기부하는 비용
 - R&D 지출의 40%
 -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간접세
 - 감가상각비
 - 노조지원비
 - 이사회 개최비용, 합병 및 청산업무 관련 비용

- 일반적으로 다음의 비용은 손금불산입된다.
 - 과소자본회사(thin capitalization)³⁾에 대한 지급이자
 - 법인세 및 불법 행위에 의한 벌금, 과태료 등
 - 법정준비금
 - 법인소득의 5%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

3) 부채/자산비율이 3:1인 경우

-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전 가격에 의해 분배된 은닉소득

4. 세율

○ 법인세율

- 2006년 이후 20% 세율이 적용된다.
- 2006년6월 터키 의회에서 신규 법인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본 법인세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된 반면 원천징수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됨
- 기본(명목) 법인세율은 20%이고 소득 잔액에 대해 15%를 부과한 원천 징수세(법인소득-법인세=소득잔액)를 포함하면 실질 법인세율은 약32%임
- * 신규 법인세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기본(명목) 법인세율은 30%이고 소득 잔액에 대해 10%를 부과한 원천징수세(법인소득-법인세= 소득잔액)를 포함하면 실질 법인세율은 37%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5. 원천징수 세율

○ 거주법인

- 배당금 : 15%
- 거주 회사의 재무부 발행 단기 증권 및 장기 채권에 대한 이자 : 0%
- 거주 회사의 기타 채권 및 어음에 대한 이자 : 0%,
- 은행 예금 : 15%
- 거래 은행에서 거래 계좌에 대해 지불한 수익 배당금 : 15%
- 환매(REPO) 계약 : 15%

○ 비거주법인

- 배당금 - 15%
- 비거주 회사의 재무부 발행 단기 증권 및 장기 채권에 대한 이자 : 0%
- 비거주 회사의 기타 채권 및 어음에 대한 이자 : 0%
- 은행 예금 : 15%

- 거래 은행에서 거래 계좌에 대해 지불한 수익 배당금 : 15%
- 환매(REPO) 계약 : 15%

6. 선납법인세(advanced corporation tax)

모든 국내외법인은 분기별 이익의 20%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법인세액을 결정할 때 선납법인세를 공제한다.

7.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다. 그러나 사업여건상 역년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무부의 승인 하에 다른 과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속하는 달의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선납법인세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14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달의 17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달의 26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8. 법정준비금

- 터키 상법에 따르면 법인은 이익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정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 최초 법정준비금
이익을 5%를 적립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20%를 한도로 한다.
 - 추가 법정준비금
최초 법정준비금과 최저 배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적

립하며 한도없이 매년 적립한다.

- 터키 상법에 따르면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에 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9. 감가상각방법

- 납세자는 세법에 의거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당초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이후에 정액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정액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나중에 정률법으로 전환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감가상각률
 - 2004년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재무부에서 정한 감가상각률(2%~33%)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다.
 - 정률법의 감가상각률은 정액법의 2배이다. 그러나 정률법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률 상한은 50%이다.
 - 영업권의 경우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하며
 - 임차재산개량료는 임차기간동안 균등비율로 감가상각한다.

3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es)

1. 개요

- 터키에는 몇 가지의 간접세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임. VAT 법에 의해 소비에 관한 8개의 간접세는 폐지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터키 안에서 상업적, 산업적 활동 내지 농업활동 및 독립적인 전문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재화와 용역이 터키 내로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
-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분배의 모든 각각의 과정에 부과되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담세자는 최종소비자.

- 터키의 부가가치세는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각료협의회(the Council of Ministers)는 특정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율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일반원칙
 -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터키 내에서 상업, 공업, 농업 또는 전문직 서비스 활동을 행하였을 경우나 재화나 용역이 터키로 수입되었을 경우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마다 부과되며, 납세의무는 수입자 및 공급자에게 있으나 실제 세금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로 귀착된다.
 - 터키의 부가가치세율은 품목에 따라 1%, 8%, 18%가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은 18%로 세율은 내각에 의해 결정된다.
- 대리납세제도
 - 납세자가 터키 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재무부는 과세 대상거래와 관련된 자료 하여금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터키의 VAT에 따르면 소위 대리납부제도(reverse charge)라 하며 외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터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함.
- 일부 품목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일부 특례는 다음과 같다.
 - 임가공(toll-manufacturing)과 가공 재료(ready-made material)는 일부 원천징수 대상이 됨. 즉 매입자가 판매자에게 전체 부가가치세의 1/3만 지급하고 나머지 2/3은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책임이 있음.
 - 폐물금속, 폐지, 고철 플라스틱 폐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매입자는 판매자에게 전체 부가가치세의 10%만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 판매인, 수입업자, 정련소, 연료유 공급회사와 연료유 대리점을 제외한 판매자에 의해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자는 판매자에게 전체 부가가치세의 10%만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3.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받은 대가이며 VAT를 포함하지 않는다.
- 받은 대가가 없거나, 현금 외의 이뤄진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유사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평균을 가격을 말하며, Tax Procedural Law에 관해서 결정된다.

4. 과세표준 제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할인액은 제외되고 할인액은 상업상 관행으로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5. 부가가치세 세율

- 표준 세율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은 품목에 따라 1%, 8%, 18%로 부과된다. 상업, 공업, 농업 및 전문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다른 활동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 모두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은 18%로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동 세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은 수도·전기·가스등 공익사업 상품 및 서비스 수입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및 가스수송 터키 내 상품 유통 등임.

○ 특별한 세율

〈품목별 부가세율〉

품목	세율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식품수송서비스, 신문, 잡지, 중고오토바이, 150s/m이하 주택, 장레저서비스	1%
육류, 농기계, 중기계, 의약품, 의료용품 및 서비스, 요식업, 숙박업, 책, 신문용지, 바닥재, 가방, 신발, 가죽의류, 내의, 면화, 양모, 박물관 및 극장 입장료, 유아식, 환자식 등	8%
기타 품목	18%

- 1% 세율 적용분 : 신문 및 잡지, 특정 농산물과 장레저서비스 등
- 8% 세율 적용분 : 음식 재료, 책과 유사한 출판물, 천연가스, 백신, 유아식품
- * 2006.3월에는 섬유 및 가죽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18%에서 8%로 인하되었음.

○ 부가가치세 면세

- 다음의 거래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
 - 석유 탐사 활동
 - 국제 운송
 - 면세 특권을 가진 외교 대표부, 영사관 및 국제 기구의 직원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 VAT 과세 대상자이고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투자 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한 기계 및 장비 공급(수입품 포함)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항구 및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문화, 교육, 의료, 보건 및 기타 유사 목적으로 정부 및 관련 기구에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지원 차원으로 또는 기타 세부 기준에 따른 면제

- 별도의 5% 은행 및 보험 거래세가 부과되는 은행 및 보험 거래
-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외 지사 및 국내외 벤처 사업으로 발생한 회사 수입
- 연구 개발 관련 거래
- 특정 기부, 후원 또는 스포츠 행사 스폰서 경비

6. 세액공제

○ 원칙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과됨 각 거래단계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 후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항목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 구입
- 소득세, 법인세법상 공제불가능한 비용

7. 부가가치세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함

-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에 근거한 기계 및 장비 구입액

4 |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1. 과세대상

2002년 8월 1일부터 법률 제4760호에 의거 특별소비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특별소비세법에 열거된 상품에 대해서는 단 일회에 한해 제조자로부터 제품이 이동하거나 수입될 때 부과되며, 특별소비세는 소비자 구입상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다음의 4가지 종류로 분류됨

List I : 석유 제품, 천연 가스, 기계용 윤활유, 용매 등

List II : 자동차, 운송차량, 오토바이, 비행기, 헬리콥터, 요트

List III : 담배와 담배 제품, 알코올성 음료

List IV : 사치 제품(향수, 화장품, 모피, 보석류, 에어컨, 에어컨, 라디오, TV 세트 등)

5 | 금융 및 보험 거래세(banking and insurance transaction tax)

1. 과세대상

은행 및 보험회사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신에 금융 및 보험거래세 (Banking and Insurance Transaction Tax)가 과세되며, 과세대상은 은행, 은행가와 보험 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거래와 서비스.

2. 납세의무자

은행 및 보험 거래세는 대출 이자와 같은 은행 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 보험 회사와 은행가 등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세율

기본세율은 5%, 은행 간 예금 거래에 대한 이자는 1%, 외환거래 거래의 경우 0.1%의 세금이 부과된다.

- General : 5%
- Interbank deposit transactions : 1%
- Repos : 1%
- Money market transactions between banks and brokers : 1%
- Sale of Government bonds and T-bills : 1%
- Sale of foreign currency : 1%

4. 신고

과세기간은 매달이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6

인지세(stamp duty)

1. 과세대상

- 인지세는 대부분의 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계약서, 합의서, 보증서, 신용장과 보증, 재무제표와 봉급명세서
- 또한 쌍방간의 문서에 있어서는 각각의 계약서 등에 인지세가 각각 부과된다.

2. 세율

- 인지세는 0.15 %에서 0.825 %까지 문서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 계약서, 보증서, 저당권 : 0.825%
 - 임대차계약서 : 0.15%

- 봉급명세서 : 0.66%

7 | 통신세(communication tax)

1. 과세대상

휴대전화 운영자(mobile phone operators)가 제공하는 모든 설비(installation), 통화(transfer),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같다.

3. 세율

- 이동통신서비스(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 25%
- 위성 또는 케이블을 통한 라디오, TV방송 서비스(Radio &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through satellite or cable) : 15%
- 유무선,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Wired, non-wired and mobile internet service providing facility) : 5%
- 기타 통신서비스(Other telecommunication services) : 15%

4. 신고

휴대전화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통신세를 신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8

상속세(inheritance)와 증여세(gift tax)

1. 과세대상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2. 세율

증여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가액(appraised)의 10%~30%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상속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1%~1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 증여 : 10% ~ 30%
- 상속 : 1% ~ 10%

3. 기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가액 평가시 공제되며 3년에 걸쳐 연간 2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9

부동산세(property tax)

1. 과세대상

터키에 소재한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할 때 부과된다.

2. 세율

- 0,1%에서 0.3 %까지 적용
- 주택(거주목적) : 0.1%

- 주택 외 건물 : 0.2%
- 나대지 : 0.3%
- 토지 : 0.1%

단, 부동산 소재지가 도시 지역 내에 있는 경우 2배 초과됨

3. 납부기한 및 환급신청

매년 2회(3~5월 중 1회, 11월에 1회) 부과되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며, 환급 신청은 매 4년 마다 접수한다.

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시 매도가액의 1% 해당하는 세금을 매도자,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

10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

1. 과세대상

자동차세 과세물건은 자동차임.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2. 납세의무자

교통국, 시당국에 납세자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로서 실질적, 법률적인 자.

3. 부과시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부과됨. 1월과 7월에 분할하여 고지된다.

4. 과세대상 분류

○ 자동차 세금에 관해서 4개의 카테고리들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List 1 : 차 특별한 다용도 차와 오토바이)

List 2 : 미니버스, 버스, 픽업, 트럭 등

List 3 : 요트, 여러 가지의 모터 배

List 4 : 비행기와 헬리콥터

5. 기타

자동차세는 과세대상의 무게, 연도, 배기량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 10 장 터키진출기업 현황 및 투자 진출방안

1. 우리기업의 對 터키 투자현황
2. 한· 터키 FTA 발효와 경제교류 증진
3. 對 터키 진출의 장애요인
4. 對 터키 투자진출 필요성(중요성)
5. 성공적인 투지진출 기본 방향
6. 터키 중기 경제프로그램

1 | 우리기업의 對 터키 투자현황

- 2007년~12년간 우리나라의 對 터키 연도별 직접투자 실적은 2007년 112,804천 달러(10건), 2008년 69,299천 달러(5건), 2009년 192,419천 달러(9건), 2010년 63,636천 달러(4건), 2011년 72,406천 달러(8건), 2012년 221,567천 달러(11건)로 나타난다.

對 터키 해외직접투자 현황(2012년)

(단위 : 천달러, %)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회수	투자금액
286	83	1,072,908	425	864,27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투자기준)

- 2012.12월말 기준 업종별 對 터키 직접투자실적(총 864,276천 달러)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725,039천 달러로 83.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도소매업으로 72,021천 달러(8.3%), 건설업 34,316천 달러(4%) 등으로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2012년)

(단위 : 천달러, %)

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점유비
합계	83	864,276	100%
제조	45	725,039	83.9%
도소매	15	72,021	8.3%
건설	3	34,316	4%
광업	4	25,554	3%
기타	16	7,346	0.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투자기준)

○ 현재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대우인터 내셔널 등 83개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주요 투자기업을 보면 아래와 같다.

對 터키 주요 투자기업 현황

(단위 : 천달러, %)

연번	회사명	투자 시기	투자내역	신고 금액	투자 금액
1	(주)카스	1992	이스탄불, 전자저울 판매법인	1,500	1,500
2	현대자동차	1997	이즈미트, 자동차공장 합작투자	255,000	255,000
		2002	공장증설 증액투자		
3	한일이화	1997	이즈미트, 자동차내장제품 생산	36,000	36,000
4	경인양행	1997	아다나/메르신, 염료생산	1,906	1,606
5	만도기계	1997	부르사, 자동차용 Shock Absorber	15,000	15,000
6	LG전자	2000	이스탄불 외곽 계브제공단, 에어컨생산	12,435	12,435
7	CJ	2004	부르사, 사료공장	2,140	2,124
8	미스도스	2004	테킬다, 장갑공장	200	2,500
9	한라공조	2005	계브제, 자동차용에어컨	2,991	2,990
10	(주)일진	2005	계브제, 에어컨 부품	1,000	500
11	KCC	2006	이즈미트, 도로	32,000	32,000
12	현대로템(주)	2006	아다파자르, 전동차량	2,040	2,040
13	KT&G	2006	이즈미트, 담배	78,900	15,541
14	효성	2007	이스탄불 인근 체르케즈콰이,	160,000	160,000
15	대양금속	2007	출루, 스테인레스 판재	34,000	10,894
16	우리텍	2007	이스탄불 외곽 계브제공단, 에어컨 부품	1,600	1,598
17	호원	2007	이즈미트, 자동차 차체 프레스	-	20,000
18	YG-1	2007	이스탄불 이키텔리공단 절삭공구	-	200
19	포스코	2010	부르사, 철강재 가공 서비스	23,500	23,500
		2011	이즈미트, 스테인레스 스틸	350,000	-
20	서일	2011	이즈미트, 음료용 빨대 공장	18,000	6,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1980년 이후 2012년 말까지 터키에 대한 한국기업의 총 투자액은 신고액 기준 1,072,908천불 가량, 실제 투자송금액은 864,276천불 가량이며 진출 기업수는 83개 정도이다.
1990년 이후 한국기업의 對 터키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992년 카스가 국내기업 최초로 현지 법인을 개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연산 10만대 규모의 최초의 해외생산공장을 터키에 설립하기도 하였다.
2007년 이후 한국 기업의 터키 투자진출은 더욱 활발해져 2007년 (주)효성은 1억 6천만불을 투자, 스판덱스 생산공장을 설립하였으며, 포스코는 철강재 서비스센터에 이어 2011년 3억 5천만불을 투자하여 스텐레스 스틸 냉연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한편 현대 자동차는 2012년 20만대 규모로 공장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 등 협력업체들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 한국 기업들의 對 터키 투자는 그간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대기업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최근 터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소기업 단독진출 사례도 늘고 있다.

2 | 한·터키 FTA 발효와 경제교류 증진

- 우리나라는 터키와 2010.3.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총 4회에 걸친 공식협상을 거쳐 2012.8.1.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측에서는 2012.11 국회 비준, 터키 측에서는 2013.1 의회 비준과 3월 내각 서명절차가 완료되어 2013.5.1. 한·터키 FTA가 발효되었다.
- 한·터키 FTA 발효로 직접적으로는 양자간 관세인하 효과, 간접적으로는 무역 및 투자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되며, 우리나라로서는 터키 자체 시장과 그 주변국에 대한 경제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에는 비교적 교류가 활발한 자동차(부품), 기계설비 및 가전제품 외에 소비재 분야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상품에 대한 관심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의 발전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주요 진출기업

지역	회사
이스탄불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전자, LG DISPLAY, LG화학, 대우 인터네셔널, 카스,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효성, 대한항공, TK CHEMICAL,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KT&G, KCC, 범한판토스, 글로벌비스, 솔상무역, YG-1, 귀뚜라미 보일러, 파카유로, STX, LG상사, LG하우시스, SK건설, 제일기획, 인션, 오토닉스, 한화, 유코카캐리어, 고려상사, 아시아나항공, 심팩, 한진해운
이즈미트, 게브제, 부르사	LG-ARCELIK, 한일아산, 한라공조, 만도, CJ, 일진, 우리텍, 호원, SIMPAK, 성진사, 한일 C&F, SKMT, 현대자동차공장, KCC공장, 포스코, 서일, 두울
데칼다 및 체르케즈코이	미스도스, 대양금속(SK), 효성공장
이즈미르	KT&G 공장
아다나	경인양행
앙카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3 | 對 터키 진출의 장애요인

- 2008년 4월 한 조사기관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터키의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해결돼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정치안정화, EU표준화 작업 완료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음. 이는 2007년 7월 집권 여당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터키 정부의 관료주의, 연구비 지출부족, 디자인 및 브랜드 창출능력 미흡, 금융기능 저조 등을 장애요인으로 부각된다.

- 또한 노동시장 분야에서 터키 엔지니어들이 직장 보장을 위해 외국인 거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을 최대한 줄이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등 노동허가 발급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터키 제조업의 평균 근로자 월급이 약 1,220달러로 중국 평균 500달러나 인도 400달러 등에 비해 비싼 점도 있다.
- 터키의 고유가 또한 적지 않은 부담임. 한 현지기업 공장장의 말을 인용하면 터키 내의 석유 가격이 독일보다 높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 한 곳으로 전기세와 물류비 등으로 고물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
- 2008년 7월 27일 터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의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사망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4 | 對 터키 투자진출 필요성(중요성)

- 최근 터키 내 정치 불안정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키 시장은 세계 최고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경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앞으로 세계경제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NEXT10의 일원으로까지 꼽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우리 기업도 터키 시장의 잠재가치를 재평가하고 경제상황 뿐 아니라 터키 내 정치 및 EU가입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 한국과 터키의 관계를 보면, 과거 터키인들이 돌궐족으로 불릴 때부터 형제국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6.25전쟁에서 혈맹의 사이가 된 바가 있음.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2002월드컵으로 더욱 가까워졌는데 그 이후 한국 상품의 현지 진출이 크게 늘어났다.
-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다.



- 터키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로 구분됨. 터키를 중심으로 지중해 건너편은 북부아프리카 흑해 건너편은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임
- 지중해 건너편의 북부아프리카를 제외하더라도 유럽지역으로는 불가리아 및 그리스, 흑해 건너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및 그루지야, 아시아 지역 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및 시리아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터키는 또한 이슬람 문화권으로서 중동의 이슬람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동시장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터키는 인종적 역사적 유대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주변지역 경제협력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1964년 터키, 이란 및 파키스탄에 의해 출범된 지역협력개발기구(Reg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 RCD)는 1984년 회교권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ECO)로 개명된 후 1992년에는 회원국이 10개국으로 확대되었음.
 - 2003년7월 터키 등 창설회원국 주도로 ECO 무역협정(3개국 간)이 체결되었음. 또한 터키는 흑해 연안국간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결성된 흑해경제협력기구(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BSEC)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BSEC는 1992년 11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세르비아의

추가 가입으로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97년1월 이슬람개발 도상국 8개국 각료급회담(Delivering8 : D-8)이 이스탄불에서 터키정부의 주도로 개최되었음. 1997년 당시 세계 인구의 13.5%에 해당하는 이슬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창설된 D-8은 이슬람 국가간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터키는 터키 한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많은 터키계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아제르바이잔 및 러시아내 터키계 자치주, 공화국)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 터키는 이러한 역사적 인종적 유대관계로 중앙아시아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동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며, 유럽과는 1996년 관세동맹을 맺어 터키에서 생산된 제품은 거의 무관세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음
- 2013.5.1.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또 하나의 미래 유망 시장이 한국 기업에 문호를 활짝 열었다. 한-터키 FTA 발효로 터키 측 공산품 관세가 7년 안에 모두 철폐돼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 특히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터키와의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상당 기간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되고, 터키는 현재 일본과는 FTA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단계이고 중국과는 아직 공식 논의가 없는 상태다.
- 한-터키 FTA 발효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TV(14%), 디젤·휘발유 중소형 승용차(10%), 합성수지(6.5%), 윤활유(3.7%), 자동차 부품(3~4.5%), 철도차량(1.7%) 등의 관세가 7년 내 모두 철폐되었다.
- 터키는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유럽연합(EU)과 관세동맹을 맺은 터키는 7천만명 규모의 방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데다 EU에 비해 인건비가 싸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 구체적인 투자목적 설정

터키에 투자하는 목적은 유럽 및 인근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터키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목적이 막연할 경우 투자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투자시행 후 벌어질 구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 투자여건을 철저히 사전분석

많은 비용과 위험 부담이 동반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여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함. 터키에 기 투자한 기업인들이 밝히는 주요 애로점은 전기료 과다, 중국 등 저임금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관료주의 등임. 따라서 비용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지, 관료주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투자품목의 장기적인 시장성 검토

터키시장이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터키시장의 중장기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저가 중국제품의 진출이 활발하다는 것으로 현재 중국제품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지법 개정여부 상시 확인

터키의 각종 법률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유예기간도 없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새로운 법률이 외국인 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 기업의 로비에 의해 제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 계획단계에서 투자완료단계 까지 지속적으로 현지 관련법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6

터키 중기 경제프로그램

- 터키 정부가 매년 하반기 발표하는 3개년 중기 경제프로그램(mid-term economic program)이 발표되었으며 여기서 거시경제 목표와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 목표
 - 2013년도 중기 경제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는 잠재 경제성장률 달성, 경상수지 적자 감소, 인플레이션 감소, 공공재정 건실화.
- 성장 및 고용
 - 목표
 - GDP 성장률은 2013년 4%, 2014년, 2015년은 각각 5.0%를 목표로 함.
 - EU 국가 등 터키 무역 상대국의 수요가 불확실해지면서, 해외보다는 국내 수요가 성장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
 - 2015년까지 고용률은 45.5%, 실업률은 8.7% 예상됨.
 - 농업분야 고용이 감소되는 가운데 2015년까지 총 150만명 고용 증가 예상
 - 정책 수단
 - 지하경제 및 지역 불균형을 축소시키고, 국내저축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이행함.
 -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국내외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함.
 -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R&D를 실시하고,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함.
- 공공재정
 - 목표
 - 2012년 GDP 대비 정부 예산 적자 비율은 1.6%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0.9%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GDP 대비 정부 지출 및 수입 비율은 향후 3년간 최근 도달한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2012년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38.6%, 수입 비율은 37.0%).
- 정책 수단
 - 교육, 보건, 기술연구, 교통, 식수,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투자에 집중함.
 - 남동부 아나톨리아 프로젝트(GAP), 동부 아나톨리아 프로젝트(DAP), 콘야 평원 프로젝트(KOP), 동부흑해 프로젝트(DOKAP) 투자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공공 투자 사업을 우선 시행함.
 - R&D 강화, 국내 저축 증가, 경상수지 적자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조세 정책을 실시함.
 - 이익 창출 불가한 공기업은 폐쇄하며, 전력 배급 및 설탕 생산에서 공기업을 배제함.
- 국제수지
 - 목표
 - 2013-2015년간 대외 무역은 완만한 추세를 보이되, 수출 시장 및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은 5.7%, 수입은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7.3%로 예상되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도 2015년 6.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수단
 - 국내 에너지 및 재생 자원의 이용 비율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를 낮춤.
 - 외국 업체의 터키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공공 기관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국산 제품을 장려함.
 -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용자와 보증 지원을 높임.
- 인플레이션

- 목표
 - 소비자 물가지수 연간 평균 상승률을 5% 수준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 수단
 - 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에 따라 시행하며, 인플레이션 목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3년 단위로 정함.
 - 동 기간 중 변동환율제를 지속 적용할 것임.
- 중기 경제발전 프로그램 주요 이행 방안
 - 경쟁력 강화
 -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중소·벤처 기업 및 소규모 상인들을 지원하며, 세관 절차 등 업무 절차를 간소화함.
 - 연료, 술, 담배 등 밀수를 근절하고 인터넷 상거래 상 과세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함.
 - 이스탄불의 국제 금융도시화 목표에 따라 금융 시장의 안정 및 다양화를 모색함.
 - 에너지 개발
 - 전력 배급 및 생산의 민영화를 시행하고, 전력 에너지원을 다양화함.
 -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을 가속화함.
 - 국내 자원 및 재생에너지 자원의 전력생산 비중을 높이고, 천연가스와 수입 석탄의 이용 비중을 낮춤.
 - 터키의 주변 지역에 있는 에너지 자원(석유, 천연가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터키가 교량 역할을 모색함.
 - 기타
 - 경쟁력 있는 구조 및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적합한 고급인력을 양성함.
 - 지역 개발 및 지역간 불균형 축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개발계획(2010~2013)에 의거하여 확정함.
 - 공공 서비스의 질 및 영향력 증대를 위해 e-국가 구조를 형성함.

제 11 장 한-터 조세조약

대한민국과 터어키 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84.06.03

1983년 12월 24일 앙카라에서 서명

1984년 6월 3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 범위】 [1984.06.03]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조세】 [1984.06.03]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 소요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간주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터어키의 경우에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이하 "터어키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대체하여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그들 각 국세법의 개정사항을 상호통지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984.06.03]

1. 이 협약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이후에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터어키"라 함은 터어키 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터어키의 법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과 함께 터어키가 국제법에 따라 그의 천연자원을 탐사 및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을 포함한다.
 - 나.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터어키를 의미한다.
 - 다.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이 협약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의 조세 또는 터어키의 조세를 의미한다.
 -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하나의 실체로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 바. "등록된 사무소"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 터어키의 경우에는 터어키상법에 의하여 등록된 본점을 의미한다.
 -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한국에 대하여는, 한국의 국적을 소유하는 모든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모든 법인, 조합, 협회 및 기타 실체
 - (2) 터어키에 대하여는, "터어키국적법"으로부터 터어키 국적을 소유하는 모

든 개인과 터어키에서 시행중인 법으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아.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 (2) 터어키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차. "국제운수"란 표현은 한국기업 또는 터어키기업이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국 또는 터어키 영토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984.06.03]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주소, 등록된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 동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5조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984.06.03]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건설, 조립이나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동 건축장,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 마. 기업을 위한 기타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그 기타 활동이 정보수집이나 학술적 조사 또는 유사한 활동의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 바. 본항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은 다음의 경우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동 인이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동 일방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단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향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어야 한다.
 - 나. 동 인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인도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일방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6. 기업이 그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

배하거나 또는 동 법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 방법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984.06.03]

1.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은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모든 종류의 어로장소,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제7조 【사업소득】 [1984.06.03]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의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

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계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서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동 고정사업장이 사용료, 이자, 수수료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의 형식으로 동 기업의 본사 또는 기타 사무소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984.06.03]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계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3. 일방계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당해기업은 터키의 기업인 경우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 터키에서 이후에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984.06.03]

- 가. 일방계약국의 기업이 타방계약국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조건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984.06.0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총액의 20퍼센트
 본항은 동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1조 【이자】 [1984.06.0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의 대부금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

- 항,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지급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984.06.0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과 라디오, 텔레비전용 녹음물을 포함한 문화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

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채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채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채약국내에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동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양도소득】 [1984.06.03]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채약국의 기업이 타방채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채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앞의 문장

에서 규정되고 타방채약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취득과 양도 간의 기간이 일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984.06.03]

1.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활동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활동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채약국에 체재하고,
 - 나. 보수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 다. 보수가 동인이 타방채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984.06.03]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재기간 동안 타방채약국에 체재하고,
 - 나. 보수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 다. 보수가 동 고용주가 타방채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전술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1984.06.03]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984.06.03]

-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동 인의 그와 같은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채약국방문이 타방채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일방채약국에서 수행

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과, 비영리조직이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의 어떤 부분이 당해 조직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이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비영리조직의 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연금】 [1984.06.03]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종신연금에도 적용된다.

제19조 【정부기능】 [1984.06.03]

1. 정부적 성격의 기능수행상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일 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그들에 의해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에 적용된다.

제20조 【교사 및 학생】 [1984.06.03]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타방체약국밖의 원천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국민이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주로 강의 또는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목적으로 타방채약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교사 또는 강사가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타방채약국밖의 원천으로부터 수령되는 경우 강의나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한 동 타방채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일방채약국의 국민인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교육 또는 조직에 관련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얻기 위하여 한 역년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채약국에서 수행하는 고용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소득】 [1984.06.03]

이 협약의 전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채약국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2조 【이중과세의 회피】 [1984.06.03]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터키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터키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터키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소득세, 법인세 및 이들 조세를 대신하거나 동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를 포함함)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터키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제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터키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터키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터키의

제 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터어키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터어키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터어키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터어키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다음과 같아야한다.

- 가. 제10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0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 나.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 다.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그러나 터어키가 비거주자에 대한 상기 언급된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세율을 그의 국내법에서 상기 언급된 세율보다 더 낮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그 더 낮은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이 된다.

- 3. 터어키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터어키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터어키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터어키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액에 의하여든지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터어키의 조세(소득세, 법인세 및 이들 조세를 대신하거나 동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기타 조세를 포함함)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터어키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터어키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3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제10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0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다.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그러나 한국이 비거주자에 대한 상기 언급된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세율을 그의 국내법에서 상기 언급된 세율보다 낮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그 더 낮은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이 된다.

제23조 【무차별】 [1984.06.03]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마치 그것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될 수 있다.

제24조 【정보교환】 [1984.06.03]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과 국내법상의 과세가 이 협약과 일치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체약국의 국내법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이렇게 교환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와 관련된 자, 이와 관련된 불평이나 구제수단을 가진 자, 또는 상기에서 언급된 조세에 관련된 형사소추를 위한 사법당국 이외의 어떤 인 또는 당국에서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서나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
 - 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와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984.06.0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그에 대하여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동 인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그 권한있는 당국은 만약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협의를 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 타방체약국에서 종속적 인적활동을 수행하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그들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방체약국에 근원이 있는 그들 국가의 수입기관이 파견하는 관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들 기관 및 사무소의 권한과 책임은 타방체약국의 법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당해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공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활동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것을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인 또는 당국과의 협력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제26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1984.06.0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이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7조 【발효】 [1984.06.03]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째 되는날에 효력을 발생하고,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동 협약이 발효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
 - 나. 터키공화국에 있어서는, 동 협약이 발효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

제28조 【종료】 [1984.06.03]

1. 이 협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2. 체약국의 일방은 이 협약의 비준 5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어느 역년의 적어도 최초 6개월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의 통고를 함으로써 동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동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종료의 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
 - 나. 터키공화국에 있어서는, 종료의 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3년 12월 24일 앙카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터키어 및 영어로 된 3가지 원본을 2부 작성하였다. 3가지 원본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시행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터어키공화국정부를
[1984.06.03]

의 정 서

대한민국과 터어키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 2조 제 3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이 협약 제 7조 제 3항에 관하여,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및 일반관리비의 합리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비용의 합리적인 금액은 다음의 방법중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에 따라서 계산된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가. 기업과 고정사업장간의 총 수입금액 비율(수입금액방법)
 - 나. 기업과 고정사업장간의 총 이윤비율(총 이윤방법)
 - 다. 기업과 고정사업장간의 총 운용자금 비율(운용자본방법)
 - 라.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기타의 만족스런 방법
3. 제 7조에 관하여,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윤 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은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그러한 이윤이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 동

타방 체약국은 어느 경우에도 그러한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그 추가적인 조세는, 한국의 경우에 방위세와 주민세, 그리고 터키의 경우에는 제 7조에 따라 과세된 후의 잔여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서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다.

4. 제 7조 제 1항에 관하여, 인위적인 판매조작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의 연락에 의해 방지될 것으로 양해한다.
5. 제 10조, 제 11조 및 제 12조에 관하여, "수익적 소유자" 조항은 제 3국 거주자가 터키 또는 한국에서 취득하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부터 혜택을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금지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6. 제 19조 제 1항에 관하여,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을 위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정보수집 또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종속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동 조항에 규정된 정부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등하게 시행되고 효력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3년 12월 24일 앙카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터키어 및 영어로 된 3가지 원본을 2부 작성하였다. 3가지 원본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시행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터키에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터키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터키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07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 작성 및 편집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국세조사관 김종국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국세조사관 이소윤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국세조사관 신중훈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07)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